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2016년 분과전문의제도 규정 개정집을 출간하면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2005년 세부전문의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9개 세부분과에서 더욱 왕성한 학회 활동을 실행하여 왔으며 우수한 능력을 갖춘 분과전문의(구 세부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과 교육도 수련교육병원이 늘어나고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분과전문을 많이 배출하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향상되어 왔음을 자부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토대로서 2005년 6월 15일 첫 규정집을 마련하고 2007년 11월 처음으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집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2011년 3월 대한의학회의 재승인을 받음과 더불어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한 규정집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2016년 3월에 대한의학회의 재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규정집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번 규정집의 가장 큰 이슈는 그동안의 ‘세부분문의’ 대신 ‘분과전문의’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세부전문의 제도가 거의 모든 학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분과전문의제도와 세부전문의제도로 이원화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집의 명칭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정 내용 상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규정을 실행하는데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들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을 통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각 분과 학회에서의 분과전문의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아과학회 내 분과전문의가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서 각분과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 분과전문의 진료의 질적 향상과 진료수가 향상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개정집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세부전문의관리이사를 비롯한 세부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3월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양 세 원

2016년 분과전문의 규정집 개정의 배경

분과전문의(세부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의 각 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하며 이런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2005년 세부전문의제도(현 분과전문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2005년 6월 15일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을 확정 후 시행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이란 제목의 규정집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2011년 3월에 전면 재개정 및 대한의학회 재승인이 이루어진 후 5년 만에 다시 재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회가 만들어져 각 학회별로 전문 분야에 따라 28개 분과학회에 설립되어 있던 세부전문의 관련 업무를 조정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세부전문의 제도가 거의 모든 학회에서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분과전문의제도’와 ‘세부전문의제도’로 이원화하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2016년 규정집 개정의 특징은 우선 대한의학회의 분과전문의제도 및 세부전문의제도 이원화 방침을 적용하여 두 개 이상의 학회로 운영되는 소아 심장분과가 ‘세부전문의’로 나머지 8개 분과는 ‘분과전문의’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규정집에는 소아 심장분과가 분리되어 나가고 8개 분과만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했던 부분들,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문구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차후 분과전문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집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전 세부전문의관리이사 은백린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더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리한 개정집 발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분과전문물관리위원회 위원 여러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3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물관리이사 **김 현 희**

목 차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규정	7
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35
3.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65
4.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107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137
6. 신생아 분과	165
7.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199
8.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227
9.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253
10. 별지 서식 목록	283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규정

2005. 6. 15 제정

2006. 3. 8 개정

2007. 2. 8 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

1.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

1. 2005. 6.15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확정하여 시행
2. 2006. 3. 8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경과규정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5조(교육기관) 수정(3차 회의록 참조)
3. 2007. 2. 8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5조(조직) 수정(4차 회의록 참조)
4. 2010. 11. 8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수정 시작(2010년 2차, 3차, 4차, 5차, 2011년 1차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5. 2011. 3.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6. 2014. 2. 25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부분 개정 시작(2014년 3월, 5월, 9월, 2015년, 2월, 5월, 11월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7. 2016. 3.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부분 개정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1.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 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과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다음 각 항의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 ①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 ②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 ③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분과
- ④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 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 ⑥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 ⑦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 ⑧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제5조] 조직

-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이사가 관리위원장이 되고, 대한소아과학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8개 각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

임할 수 있다.

- ⑤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각 분과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시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 ①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보칙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분과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각 분과 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과학회
- ② 각 분과 학회
- ③ 각 분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각 분과 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각 분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각 분과 학회 별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인정학회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언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교육 결과 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각 분과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각 분과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의 각 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분과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응시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해당 분과 전문 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 당일 분과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해당 분과학회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전문 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분과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

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 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

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8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분과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규정된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8개 각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 ④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회의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재정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분과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6조] 행정요원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2016.3.1)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	
	2.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	[제2조] 정의 “세부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3	[제3조] 의의 세부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과의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3조] 의의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해당 분과의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4	[제4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다음 각 항의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① 소아청소년과 감염 ②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③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④ 소아청소년과 신경 ⑤ 신생아 ⑥ 소아청소년과 신장 ⑦ 소아청소년과 심장 ⑧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⑨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제4조] 분과 대한소아과학회는 다음 각 항의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문과목과 해당 분과의 전문의를 인정한다. ①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② 소아청소년과 내분비분과 ③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분과 ④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⑤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⑥ 소아청소년과 신장분과 ⑦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⑧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소아청소년과 심장은 따로 분리될 예정
5	[제5조] 조직 ①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세부전문의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학회 총무이사나 부위원장이 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 와 9개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제5조] 조직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이사가 관리위원장이 되고, 대한소아과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이 되며, 8개 각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교육이사, 학술이사, 고시이사 삭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교육, 학술, 고시이사) 및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세부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 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⑤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학회의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둔다.	
7	[제7조] 수련 ①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 ①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제8조] 수련병원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자격인정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9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자격인정시험 명칭을 자격시험으로 변경 자격인정증명명을 자격증으로 변경

조항	현행	개정	비고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0	[제10조] 시험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시험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1	[제11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①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①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3.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각 분과 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각 분과 학회 별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 학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각 분과 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각 분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② 각 분과 학회 별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인정 학회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3번항목추가
7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 분과관리 위원장 ”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 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①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제11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제11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 5조의 교육 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 평점을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각 분과 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1일당 3평점 ,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	

조항	현행	개정	비고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각 분과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3.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④ 항목 추가
10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분과전문의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11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요건이 소멸 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5. 소아과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	[제8조] 합격자 결정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	[제8조] 합격자 결정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 교부한다.	
	6.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3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 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증 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 증명서	
6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7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7.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6.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2006. 2. 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대한소아감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대한소아감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제도는 소아청소년과 감염학 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환자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기하여 소아청소년과 감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 의학지식의 급격한 팽창
- 소아청소년과 감염학의 급속한 발전
- 의학의 세분화, 초 세분화 경향에 대한 자연적 반응

2. 의료 기술적 측면

- 새로운 백신의 개발 및 도입
- 소아청소년과 감염 영역에서 신지식 습득 필요성 증대
- 항생제 내성균의 급증과 새로운 항생제의 사용
- 진료용 첨단 의료 기기의 개발과 발전

3. 질병양상의 변화

-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 기회 감염의 증가
- 육아양상 변화 등에 의한 감염병의 역학 변화
- 항생제 내성균의 급증
- 사회, 경제, 기후 및 국제 환경 등에 의한 감염병의 변화

4. 국민의 의료욕구 추이의 변화

- 복지 건강 사회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욕구 증가

5. 현실적 측면

- 교육 병원에 근무하는 교육 지도자의 대다수가 세부전공과목 해당 업무를 수행
- 대한소아과학회의 학술 활동도 세부전공과목별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

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전문 분과인 소아청소년과 감염학 분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이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와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감염학 분야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 등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이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은 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분과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1.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1년에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 1).

[제6조] 수련

1.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감염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로 한다. 또한 다른 사정에 의하여 수련을 3월 1일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을 수련하도록 한다.
4.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감염학 교육 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감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인정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 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동안([제6조] 수련 참조)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

- 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별표 2).
 2.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1.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분과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2. 대한소아감염학회는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감염학회
2.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1. 분과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2)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2. 대한소아감염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하며,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가 포함된다(별표 1).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대한소아감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

을 수 있다.

-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감염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한다.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일당 최대 5평점을 부여하며,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는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의 경우는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시간당 1점의 평점이 부여되나, 관련학회 또는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학술대회에 준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에는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별표2)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6 년 2 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 전문의를 말한다.
4.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또한 다른 사정에 의하여 수련을 3월 1일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을 수련하도록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해야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3).
2.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 감염학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감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 4).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2.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1.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연도 수련 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2.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감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5).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분과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 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동안(소아청소년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6조] 수련 참조)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감염병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4.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향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이라 한다) 위원장과 대한소아

감염학회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이하 “분과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증명서
4.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5.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7.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8.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9.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1. 분과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 (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분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행위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감염학회에 제출하며, 분과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대한소아감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분과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분과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 분과 관리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1. 분과 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장이 관리위원을 5명 이상 선출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제4조] 회의

1. 분과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분과 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분과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분과 관리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1. 분과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분과 관리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분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	국내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면역저하환자 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감염에 관련된 기타 학회
	국외	미국소아과학회 ICAAC APS-SPR European SPR FASEB ESPID WSPID Asian-SPR ASPID CDC(workshop 포함) WHO(workshop 포함) IDSA WCC ICC ICID ISAAR 전세계 및 지역별 감염과 관련된 학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8조 제 1항 관련)

분과	학술지
소아청소년과 감염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Infection & Chemotherapy 대한의사협회지 SCI 등재 학술지 SCI extension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과 감염	교육지도자수 + 1

<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중 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1조 제5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학술지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감염 관련 논문(증례보고 및 종설은 제외)을 게재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100 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50 명 이상 (3) 타분과를 포함한 타과의 진료상담 30 건 이상
교육내용	1. 소아감염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① 중요 임상 증후군 ② 예방 접종 ③ 감염 관리 ④ 세균 감염 ⑤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⑥ 클라미디아 감염 ⑦ 바이러스 감염 ⑧ 진균 감염 ⑨ 리케차 감염 ⑩ 기생충 감염 ⑪ 항생제 요법 2. 소아청소년과 감염 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 진료 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4. 인성교육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1조 4항 관련)

분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과 감염	1. 교육지도자수 : 1 명 이상 2. 병상 수 : 400 병상 이상* 3. 진료시설 : 소아집중치료실 시설 및 장비 인공호흡기 pulse oxymetry EKG monitoring BP monitoring 4. 관련 타과유무 : 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 단, 대학병원은 병상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한소아감염학회 분과전문의 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2016.3.1)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조항	현행	개정	비고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소아감염학	소아청소년과 감염학	
1	3. 질병양상의 변화 -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 기회 감염의 증가 - 육아양상 변화 등에 의한 감염병의 역학 변화 - 항생제 내성균의 급증	3. 질병양상의 변화 - 과거와 다른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 기회 감염의 증가 - 육아양상 변화 등에 의한 감염병의 역학 변화 - 항생제 내성균의 급증 - 사회, 경제, 기후 및 국제 환경 등에 의한 감염병의 변화	

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소아청소년과 감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6조] 수련 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 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로 한다.	[제6조] 수련 3.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 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로 한다. 또한 다른 사정에 의하여 수련을 3월 1일에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을 수련하도록 한다.	
2	[제7조] 수련병원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7조] 수련병원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3	[제8조] 자격 인정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소아감염’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별표2).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8조] 자격 인정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3) 수련 교육회기 동안([제6조] 수련 참조)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별표2). 2.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4	[제9조] 시험 2. 세부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2.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11조] 평점 2.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한다.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일당 최대 3평점을 부여하며,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는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의 경우는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시간당 1점의 평점이 부여되나, 관련학회 또는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학술대회에 준한다.	[제11조] 평점 2.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한다.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1일당 최대 5평점을 부여하며,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는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의 경우는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주관하는 경우 시간당 1점의 평점이 부여되나, 관련학회 또는 인정학회가 주관하는 경우는 학술대회에 준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소아감염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에는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4.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 3.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4.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 인정 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한국소아감염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동안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소아감염'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3.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 1 혹은 2항을 만족시키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동안(2.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 참조)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수련 교육회기 동안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지 또는 감염관련 내용으로 SCI 및 SCI extension에 제 1저자로 원저를 1편 이상 게재해야 한다(게재 예정도 포함됨). 2.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3.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감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 년 2월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전문의 별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별표 1] 국내 관련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면역저하환자 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감염에 관련된 기타 학회	[별표 1] 국내 관련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백신학회 대한의진균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대한면역저하환자 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감염에 관련된 기타 학회	
2	[별표 1]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소아과 소아감염 감염과 화학요법 대한의사협회지 SCI 등재 학술지 SCI extension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1]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Infection & Chemotherapy 대한의사협회지 SCI 등재 학술지 SCI extension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3.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2006. 2. 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2.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1)	학술대회의 인정한계
별표 1-2)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별표 1-3)	집담회 및 연구회 인정한계
별표 1-4)	지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인정한계
별표 1-5)	지회, 병원, 개원의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 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각 분과 별 기준
별표 6)	경과규정
별표 7)	교육 내용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I.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1. 2005. 6. 15 소아과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을 확정하여 시행
2. 2006. 3. 8 소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경과규정과 세부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5조(교육기관) 수정(3차 회의록 참조)
3. 2007. 2. 8 소아과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5조(조직) 수정(4차 회의록 참조)
4. 2010. 11. 8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수정시작 (2010년 2차, 3차, 4차, 5차, 2011년 1차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5. 2016. 2. 18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II.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2011. 3.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에 맞추어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2016. 3.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에 맞추어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개편

2.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과 전문의로서 소아내분비학에 대한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 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 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3명(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부회장 등)과 일반 위원 4명이 위원이 된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세부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ㄱ.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 ㄴ.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격인정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a) 전임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 2년차 또는 3년차 이상 근무
 -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d) 연구소 근무

- e) 해외연수
- f) 기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 ① 자격 인정의 유효 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보칙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2. 대한소아내분비학회
3.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정 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ㄱ.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ㄷ.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ㄹ.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 ㅁ.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인정학회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별표 1-1 참조).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행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혹은 의학회 평점 신청 후 발행된 평점카드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중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를 말한다.
- ②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 ④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의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ㄱ.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 ㄴ.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제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아래 수련 내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ㄱ. 연수교육 :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ㄴ. 논문 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지(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pem)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중재, 종설)을 게재하여야 하며(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
 - ㄷ. 학술대회 참석: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 또는 관련학회(별표 1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참석
 - ㄹ.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 ㅁ.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20명 이상의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의 외래환자 진료, 10건 이상의 타과와의 진료 상담 실적이 있어야 한다.
 - ㅂ. 응시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a)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b)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연구회 제외).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ㄱ.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ㄴ. 별지 제6-2호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ㄷ.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ㄱ.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 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 ㄷ. 별지 제10-2호[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 ㄹ.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 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지(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pem)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을 게재한 자
- ② 교육 환경의 확충: 분과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수련내용의 보관: 다음의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ㄱ. 수련계획서: 학회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기초로 작성
 - ㄴ. 수련이수자 명부
 - ㄷ. 수련기록부

[제11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②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6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ㄱ.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a) 전임의: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 2년차 또는 3년차 이상 근무

b)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c)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d) 연구소 근무

e) 해외연수

f) 기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은 각각 6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

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2호[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또는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2호[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2호[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 ③ 분과전문의 수련 2년 종료 후 게재된 논문이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분과전문의 수련 중 데이터를 모아 작성된 논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예: 환자 모집기간이 분과전문의 수련 중인 경우), (2) 같은 내용이 분과전문의 수련 중 구연 또는 지상 발표가 되었던 경우, (3) 외국 학회지(SCI, SCIE급 이상)에 분과전문의 수련 중 제출하였던 논문으로 게재가 거부되어 재차 제출되어 발간된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 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인정증 사본
- ② 별지 제17-2호[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또는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③ 별지 제18호[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 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 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분과전문의 자격 상실 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 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 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 규정에 의하여 서류 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분과전문의 자격 정지 후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은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 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②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은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간행이사 등에서 당연직 3명과 일반 위원 4명을 선정한다.
- ③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④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당연직 위원 및 일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내분비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행정요원

-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학술대회의 인정한계:(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1평점/일)	
국내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4평점/일	국내	대한골대사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갑상선학회 ¹⁾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²⁾	2평점/일		
국외	미국내분비학회, 미국당뇨병학회, 유럽소아내분비학회, 미국-유럽소아내분비학회, 아시아태평양소아내분비학회, 국제당뇨연맹, 국제소아청소년당뇨병학회	2평점/일	국외	한일당뇨병학회, 아시아당뇨병학회, 세계당뇨병학회, 유럽당뇨병학회, 아시아내분비학회, 유럽내분비학회, 세계내분비학회, 한중일갑상선심포지움, 아세아갑상선학회, 세계갑상선학회, 세계비만학회, 미국골대사학회, 유럽갑상선학회, 일본내분비학회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③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¹⁾ 대한갑상선학회는 2011년 추가, 평점은 2011년부터 인정

²⁾ 대한비만학회는 2016년 관련학회에서 인정학회로 변경

<별표 1-2>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고
대한소아과학회	소아내분비 세분전문의 또는 소아내분비학회가 인정하는 강사가 연자인 강좌가 전체 강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상기인이 강의한 시간을 합산하여 분은 절하한 후 시간 당 1평점, 하루 최대 6평점을 인정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의학회 평점 인정(하루 최대 6평점)
아시아태평양소아내분비학회	전임의 meeting 인정 (2평점/일)
미국내분비학회 미국당뇨병학회 유럽소아내분비학회 미국-유럽소아내분비학회 국제당뇨연맹 국제소아청소년당뇨병학회	전임의 Training program 불인정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 ③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1-3> 집담회 및 연구회 인정한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고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집담회: 1시간 당 1평점 연구회: 1시간 당 1평점

평점을 인정하는 연구회와 집담회 종류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결정한다.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1-4〉 지회에서 시행하는 학술대회 인정한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
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인정 (2평점/일)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인정 (1평점/일)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인정 (2평점/일)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인정 (2평점/일)	대한갑상선학회 ¹⁾	2011년부터 인정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¹⁾ 대한갑상선학회는 2011년 추가, 평점은 2011년부터 인정

〈별표 1-5〉 지회, 병원, 개원의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소아청소년과 내
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 고
대한소아과학회 지회	불인정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지회	1) 자격갱신 시에는 평점 인정(하루 최대 6평점, 시간 당 1평점) 2) 첫 자격인정 시험 시에는 불인정
대한당뇨병학회 지회 대한내분비학회 지회	1) 자격갱신 시에는 평점 인정(하루 최대 6평점, 시간 당 1평점) 2) 첫 자격인정 시험 시에는 불인정
위 4개 단체를 제외한 동문회, 병원, 개원의협의 회 등 단체에서 주관	불인정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각 분과 별 기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분과	학술지	비고
소아청소년내분비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대한내분비학회지 당뇨병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임상당뇨병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지 골대사학회지 SCI 및 SCIE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2006년 2월부터 평점 인정
	대한갑상선학회지	2011 추가 평점은 2011년부터 인정
1)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학술지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미 출판된 것은 별책 제출하고, 게재예정은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 － 출판 예정 논문은 접수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것만 인정 － 출판 예정인 논문은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 2) SCI 및 SCIE에 등재된 학술지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는 내분비 관련 논문만 인정 [관련성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판단]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각 분과 별 기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교육지도자수 + 1
	소아내분비 2년차 이상의 전임의는 전임의 정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4> 수련 내용: 각 분과 별 기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교육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 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명시된 학술대회(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지(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pem)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을 게재하여야 한다(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 수	(1) 입원환자 진료 20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1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교육내용	별지 “교육 내용” 참조.
학술대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 또는 관련학회(별표 1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참석
정회원의 의무	응시자격 심사 전 2년 동안, 연속으로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는 다음 a항과 b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a)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b)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연구회 제외).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③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각 분과 별 기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2조 2항 관련)

분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1. 교육지도자수 : 1 명 이상 2. 병상 수 : 500 병상 이상 3. 진료시설 : 4. 관련 타과유무 : 내 과, 외 과, 산부인과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경과규정

한시적으로 수련인정과 서류심사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하여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분과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아래 내용을 심사한다.

제1조(수련인정)

2006년 3월 이전에 소아과 전문의가 된 자 중에서 1항 또는 2항을 만족하는 자는 수련인정을 분과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통과를 거친 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① 분과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소아내분비 전임의 수련을 받고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제2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 ② 3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소아과 전문의로서, 인정자격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분과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및 논문평점 60평점 이상을 취득하고 제2조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제2조(정회원의 의무)

- ① 수련인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 ② 수련인정을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였거나 또는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집담회에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제3조(서류심사 자격인정)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서는 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타 분과의 분과전문의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 ① 대학병원에서 소아내분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동일 전공의 해외연수를 마친 부교수 이상의 직책을 수행중인 교육지도자
- ②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1985년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 이상 소아내분비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정회원인 자

상기 기준에 합당하여 소아내분비 수련인정과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코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의사면허증 사본,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각 1부씩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2. 제정

2011.3.1 공고: 2011년부터 이후 더 이상 추가로 경과규정에 따른 분과전문의 인정하지 않음

<별표 7> 교육 내용

제 1장 검사 및 처치

1. 내분비-대사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음 사항을 설명한다.
 - 1) 임상검사
 - 2) 면역측정법
 - 3) 핵의학적 검사 및 치료
 - 4) 초음파 검사
 - 5) 방사선 검사
 - 6) 영상검사
 - 7) 자극 및 억제검사
 - 8) 갑상선 세침흡인세포진 검사
2. 호르몬의 분류와 작용 기전을 설명한다.
3. 성장
 - 1) 정상 성장유형
 - 2) 성장 평가방법을 설명한다.
 - 3) 성장장애질환의 원인을 열거한다.
 - 4) 과성장과 고신장의 원인과 진단방법을 설명한다.

제 2장 시상하부 및 뇌하수체

1.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 1) 뇌하수체와 시상하부와와의 구조적 특성 및 기능적 연관성을 설명한다.
 - 2) 뇌하수체문맥(hypophyseal portal veins)의 구성과 흐름을 이해한다.
 - 3) 각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특성 및 작용을 이해한다.
 - 4) 각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의 분비능 검사를 설명한다.
 - 5) 복합뇌하수체 자극 검사를 설명한다.
2.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1) 뇌하수체 기능저하증의 원인을 열거한다(Etiology of hypopituitarism).
 - 2) 병태생리, 임상 상 및 진단의 원칙을 설명한다.
3. 성장호르몬결핍증
 - 1) 성장호르몬과 인슐린양 성장인자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 2) 인슐린양 성장인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열거한다.
 - 3) 인슐린양 성장인자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4) 성장호르몬 치료의 적응증을 설명한다.
 - 5) 성장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설명한다.
 - 6) 성장호르몬 저항증후군을 설명한다.
4. 뇌하수체기능항진증
 - 1) 뇌하수체 기능항진증의 원인을 열거한다.

- 2) 병태 생리, 임상상 및 진단의 원칙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5. 뇌하수체 종양
 - 1) 뇌하수체 종양의 임상적, 기능적 및 면역조직학 분류 및 역학을 이해한다.
 - 2) 증상
6. 항이노호르몬의 분비특성 이해
 - 1) 뇌하수체 후엽의 해부학적 소견을 설명한다.
 - 2) ADH의 분비기전을 설명한다.
 - 3) ADH의 osmotic regulation을 설명한다.
7. 요붕증
 - 1) Diabetes insipidus의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병태생리 및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수분제한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4) 진단방법 및 치료를 설명한다.
8. 항이노호르몬 과다분비 증후군(SIADH)
 - 1)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4) 저나트륨 혈증의 감별진단을 열거한다.

제 3장 갑상선

1. 갑상선 호르몬
 - 1) 갑상선호르몬의 생합성 과정을 이해한다.
 - 2) 신생아기의 갑상선의 기능변화를 설명한다.
 - 3) 갑상선 호르몬 분비의 정상적인 조절을 설명한다.
 - 4) 임상적으로 유용한 갑상선 호르몬 측정법을 설명한다.
 - 5) 유리 갑상선 호르몬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 6) 갑상선호르몬이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전을 설명한다.
2.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1)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빈도와 원인을 열거한다.
 - 2)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임상증상 및 진단을 설명한다.
 - 3) 신생아 갑상선 집단 선별검사의 의미 및 방법을 설명한다.
 - 4)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3. 후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의 흔한 원인을 열거한다.
4. 항갑상선 호르몬 결합 그로불린(TBG)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5. 갑상선 자가항체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6. 갑상선 주사(scan)를 판독 할 수 있어야 한다.
7. TRH 자극시험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8. 갑상선 기능 측정의 선별 검사법을 설명한다.
9. 미세침 흡인 세포진단 검사
10. 갑상선기능항진증
 - 1) 원인질환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그레이브스병의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3) 그레이브스병의 임상 상을 설명한다.
 - 4)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옥소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한다.
 - 5) 갑상선 중독 위기를 설명하고 이를 치료한다.
 - 6) 안구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한다.
11. 갑상선종대의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12. 갑상선염
 - 1) 갑상선염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만성 림프구성 갑상선염의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3) 만성 갑상선염의 진행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설명한다.
13. 갑상선 종양
 - 1) 갑상선 종양을 분류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갑상선 악성 종양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갑상선 악성 종양을 수술 적 치료를 설명한다.
 - 4) 갑상선 악성 종양에 대한 방사선 옥소 치료를 경험한다.

제 4장 당뇨병과 저혈당

1. 대사조건에 다른 당대사의 항상성(homeostasis)을 설명한다.
2. 인슐린
 - 1) 인슐린 분비의 특성을 설명한다.
 - 2) 임상적으로 유용한 인슐린 분비 자극 검사를 설명한다.
 - 3) 혈청 C-펩타이드의 측정 의미를 설명한다.
 - 4) 인슐린저항성을 측정하는 검사를 설명한다.
 - ① HOMA ② IVGTT(minimal model)
 - ③ Euglycemic clamp test
3. 당뇨병
 - 1) 경구당 부하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2) 당화혈색소/후룩토사민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제 1형 및 제 2형 당뇨병의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4) 제1형 당뇨병 환자의 혈청에서 검출되는 자가항체의 종류와 의의를 설명한다.
 - ① ICA ② IAA ③ Anti-GAD Ab.
 - ④ IA-2 등
 - 5) 당뇨병을 분류하고 그 임상적 의의를 설명한다.
 - 6) 이차성 당뇨병을 초래하는 질환을 열거한다.

- 7) 임신성 당뇨병의 진단 기준 및 치료를 설명한다.
 - 8) 혈당관리 기준을 설명한다.
 - 9) 식사요법을 설명한다.
 - 10) 운동요법을 설명한다.
 - 11) 경구혈당강하제를 작용별로 분류하고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12) 인슐린 치료의 적응증과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13) 인슐린 펌프, 췌장 또는 췌도세포 이식을 설명한다.
 - 14) 당뇨병 환자의 수술시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 15) 당뇨병 환자의 임신시 관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4. 당뇨병성 급성 합병증
 - 1)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의식장애의 원인을 열거한다.
 - 2) 당뇨병성 케톤산증의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 치료원칙을 설명한다.
 - 3) 고삼투압성 혼수의 치료를 설명한다.
 5. 당뇨병성 만성 합병증
 - 1) 신경병증을 분류한다.
 - 2) 말초 신경병증의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자율신경병증의 진단방법과 임상상을 설명한다.
 - 4) 신경병증의 관리를 설명한다.
 - 5) 망막병증을 분류 및 설명한다.
 - 6) 망막병증의 관리를 설명한다.
 - 7) 신증의 관리를 설명한다.
 6. 저혈당
 - 1) 인슐린 길항 호르몬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 2) 원인을 열거하고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설명한다.
 - 3) 인슐린중의 진단 및 치료를 설명한다.
 - 4) 저혈당증의 치료를 설명한다.
 7. 대사성 증후군의 구성 및 의의를 설명한다.

제 5장 칼슘, 인 및 골대사

1. 칼슘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
 - 1)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특성과 작용을 설명한다.
 - 2) 임상적으로 유용한 부갑상선 호르몬 측정법을 설명한다.
 - 3) 비타민 D의 활성화 과정과 작용을 설명한다.
 - 4) 칼씨토닌의 작용을 설명한다.
2. 고칼슘혈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 상을 설명한다.
 - 3) 응급 및 유지 치료를 설명한다.

- 4) 원발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의 증상, 진단 및 치료를 설명한다.
 - 5) 원발성, 이차성, 삼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차이를 설명한다.
 - 6) 부갑상선기능항진증과 관련된 다선 신생물을 설명한다.
 - 7) 악성 종양에서 동반되는 고칼슘혈증의 발생기전을 설명한다.
3. 저칼슘혈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응급 및 유지 치료를 설명한다.
 - 4) 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 가성가성부갑상선기능저하증을 감별진단한다.
4. 골다공증
- 1) 골다공증의 분류를 설명하고 발병기전을 설명한다.
 - 2) 골밀도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골대사 생화학지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4) 치료 약제를 열거한다.
5. 골연화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 진단한다.
 - 2) 임상 상 및 진단과 치료를 설명한다.

제 6장 부 신

1. 부신 호르몬
- 1) 정상적인 코르티코이드 및 부신 안드로겐 분비를 설명한다.
 - 2) 정상적인 알도스테론 분비를 설명한다.
 - 3) 부신에서 정상적인 카테콜아민 분비를 설명한다
 - 4) 임상적으로 유용한 부신히르몬 측정법을 설명한다.
 - 5) 인슐린유발 저혈당에 의한 ACTH-코르티졸 분비검사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6)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자극 검사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7) Corticotropin releasing hormone (CRH) 자극 검사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8) Dexamethasone 억제시험 및 그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2. 선천성 부신피질과형성증
- 1) 유전적 결함이 있는 부위를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4) 부신위기의 증상 및 치료법을 설명한다.
3. 부신기능저하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4) 자가면역성 다선 기능부전증을 분류하고 설명한다.

4. 알도스테론증

- 1) 원발성 및 이차성 알도스테론증을 감별진단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원인질환에 따른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5. 저알도스테론증

- 1) 원인 질환을 열거한다
- 2) 임상상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6. 부신 종양

- 1) 원인 질환을 열거하고 감별진단한다.
- 2)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감별진단한다.

7.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물의 사용상 주의점을 설명한다.

8. 갈색세포종

- 1) 임상상을 설명한다.
- 2) 생화학적 진단 및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제 7장 성분화 이상질환 및 성선 이상

1. 정상적인 성 분화과정을 설명한다.
2. 염색체 이상에 의한 성 분화장애의 발병기전, 임상상,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1) 크라인펠터(Klinefelter syndrome) 증후군(세정관 형성 이상)
 - 2) 터너 증후군(Turner's syndrome) (성선 형성 이상)
 - 3) 혼합 성선 형성 이상
 - 4) 진성 반음양증
3. 성선 이상에 의한 성 분화장애의 발병기전, 임상상,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1) 순수 성선형성 이상
 - 2) 무고환 증후군
4. 표현형 이상에 의한 성 분화장애의 발병기전, 임상상,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 1) 여성 가성 반음양증
 - 2) 남성 가성 반음양증

제 8장 사춘기 이상질환

1.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한다.
2. 사춘기 급성장을 이해한다.
3. 성조숙증
 - 1) 진단기준과 진단과정을 설명한다.
 - 2) 성조숙증과 사춘기 발달의 정상변이를 감별한다.
 - 3) 성조숙증을 분류한다.

- 4) 성선자극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약제의 적응증을 설명한다.
4. 사춘기 지연의 원인을 열거한다.

제 9장 기타 대사 질환

1. 고지단백혈증
 - 1) 정상적인 지단백 대사를 설명한다.
 - 2) 지단백 측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한다.
 - 3) 고지단백혈증을 분류한다.
 - 4) 고지단백혈증의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2. 비만증
 - 1) 체중유지에 관련된 요인들을 열거하고 설명한다.
 - 2) 비만증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한다.
 - 3) 체중감량을 위한 열량을 처방한다.
 - 4) 열량제한 식사를 설명한다.
 - 5) 식사요법의 효과와 주의점을 설명한다.
 - 6) 운동요법의 효과와 주의점을 설명한다.
 - 7)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의 효과와 주의점을 설명한다.
 - 8) 비만증의 치료 및 예후를 설명한다.
3. 선천성 대사질환
 - 1) 선천성 대사질환의 신생아 감별검사의 의미와 방법을 숙지한다.
 - 2) 선천성 대사질환을 분류한다.
 - 3) 선천성 대사질환의 진단방법과 치료를 설명한다.

제 10장 호르몬과 종양

1. 종양에 대한 호르몬의 영향을 설명한다.
2. 이소성 호르몬 분비의 종류 및 특성을 설명한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3.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ㄷ.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ㄹ.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ㄴ.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ㄷ.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ㄹ. 대한소아내분비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ㅁ.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②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인정학회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수교육 인정 학회에 국제소아청소년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포함 (별표)

4.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2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소아청소년 내분비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내분비 전임의를 수련 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소아청소년 내분비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내분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세부전문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④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지도전문의”라 함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② 아래 수련 내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ㄱ. 연수교육 :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ㄴ. 논문 제출 :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참조)에 제1저자 또는 공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이 게재되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논문은 접수가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인 것만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게재예정 증명서와 가제본 제출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② 아래 수련 내용을 이수하여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ㄱ. 연수교육 : 수련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또는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통해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 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ㄴ. 논문 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지(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pem)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을 게재하여야 한다(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0		[제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학술지(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apem)에 주저자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의 논문(원저, 증례, 종설)을 게재한 자 ② 교육 환경의 확충: 분과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련내용의 보관: 다음의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ㄱ. 수련계획서: 학회의 기본적 요구사항을 기초로 작성 ㄴ. 수련이수자 명부 ㄷ. 수련기록부	신설

5.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11	[제11조] 보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 내분비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제11조] 보칙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정한다. ③ 분과전문의 수련 2년 종료 후 게재된 논문이라도 다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분과전문의 수련 중 데이터를 모아 작성된 논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예: 환자 모집기간이 분과전문의 수련 중 인 경우), (2) 같은 내용이 분과전문의 수련 중 구연 또는 지상발표가 되었던 경우, (3) 외국 학회지(SCI, SCIE급 이상)에 분과전문의 수련 중 제출하였던 논문으로 게재가 거부되어 재차 제출되어 발간된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

2006. 9. 1 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2.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8. 별표 목록

별표 1-1) 연수강좌 및 실습 인정한계

별표 1-2) 학술대회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 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별표 6) 경과규정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의 개정 및 수정 과정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1. 2005. 6.15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확정하여 시행
2. 2006. 3. 8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경과규정과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중 제5조(교육기관) 수정(3차 회의록 참조)
3. 2007. 2. 8 소아과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제5조(조직) 수정(4차 회의록 참조)
4. 2010. 11. 8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 시행 규칙 전면 개편 수정 시작(2010년 2차, 3차, 4차, 5차, 2011년 1차 세부전문의 관리 위원회 회의록 및 변경 대비표 참조)
5. 2011. 3. 1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6. 2016. 3. 1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의 전면 개편 수정안이 의학회 승인 후 시행됨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규정 개정 과정

- | | |
|-------------|--|
| 2010. 11. 8 | 소아청소년과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에 맞추어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 |
| 2016. 3. 1 |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에 맞추어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관리 및 관련 시행 규정 전면 개편 수정 |

2.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학 전문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분과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에 대한 임상학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차기회장, 총무 임원, 학술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평점 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수련

- ①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 기간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 기간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8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 응시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수련 내용 (별표 4 참조)을 이수한 자로 한다.
 - 1-1. 해당분야라 함은 1, 2, 3차 병원,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 연구소,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 1-2.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시험

- ①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정한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1-1, 1-2).

[제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지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4호 개정 및 별지 5호 삭제)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연수교육 참석 증빙방법 확대 및 변경)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최대 6점), 학술대회는 1일 4평점,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 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정 카드 혹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별표2)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 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12조] 기록 보관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을 말한다.
-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는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3).

-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별도(별표 4)로 정하며, 수련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교육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교육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교육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소화기영양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교육 책임자는 별지 제 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 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별표5). (별지내용 변경)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 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지 내용 변경)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자격인정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수련 내용 (별표 4 참조)을 이수한 자
 1. 해당분야라 함은 개업 (소아소화기 환자 진료), 1, 2, 3차 병원,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 연구소, 해외연수 등을 말한다.
 2. 기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한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을 득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전문 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아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관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 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과 소화기 영양 교육 책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분과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별지내용 변경)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채점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

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평점과 논문평점을 합산하여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내용 변경)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까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인정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4. 기간 내 발표된 논문 목록 및 별책 (별지내용 변경)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

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분과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아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③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관리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차기회장, 총무 임원, 학술위원장은 당 연직 위원이 된다.
-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4조] 회의

-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 ③ 회의 결과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별표 목록

<별표 1-1> 연수강좌 및 실습의 인정한계 (소아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비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간학회 대한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연구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의학회 평점 인정 (1일 최대 6평점) 심포지움: 1시간 당 1평점 위커숍: 1시간 당 1평점 집담회: 1시간 당 1평점 연구회: 1시간 당 1평점
전 세계 및 지역별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전 세계 및 지역별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1일 최대 6평점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 ③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1) 인정 학회의 지회에서 개최한 연수강좌와 실습은 학회에서 주최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점을 인정한다.
- 2) 상기에 명시 되어 있는 학회가 아니어도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2> 학술대회의 인정한계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1평점/일)	
국 내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4평점/일	국 내	영양에 관련된 제반 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소화관운동학회 대한간학회 대한Helicobacter 및 상부위장관연구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	2평점/일 * 대한 소아과 학회 3점/일		
국 외	전 세계 및 지역별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전 세계 및 지역별 Gastroenterology, Hepatology, Nutrition 관련 학회	2평점/일	국 외	전 세계 및 지역별 소아과학회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③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1)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평점을 가산한다.
- 2) 상기에 명시 되어 있는 학회가 아니어도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범위 :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조와 11조 6항 관련)

분과	학술지
대한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PGHN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소화기학회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대한간학회지 대한 <i>Helicobacter</i> 및 상부위장관연구학회지 대한장연구학회지 대한소화관운동학회지 대한비만학회지 한국정맥경장영양학회지 SCI 및 SCIE 등재 학술지 (소아 영양 및 소화기 관련 논문 게재인 경우)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소아 영양 및 소화기 관련 논문 게재인 경우) 그 외에 소아 소화기 (Gastroenterology, Hepatology, Pancreas), 영양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 대학교내 의과학 학술지 (소아 영양 및 소화기 관련 논문 게재인 경우)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③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3일 개정되었다.

④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

- 1)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 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 한다.
- 2) 상기에 명시 되어 있는 학술지가 아니어도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과 관련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교육지도자수 + 2 2년차 이상의 전임의는 전임의 정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회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 (단,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에서 5평점 이상) 이수.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 이수
학술대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주최 실습 포함) 논문발표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2항에 명시된 학술대회 또는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주최 실습 (별표 1참조)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6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참조)에 제1저자 1편 이상의 논문 (중례, 원저, 종설)을 게재(게재 예정 증명서 가능)
세부분과 진료내용	(1) 입원환자 진료 _100_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_300_명 이상 (3) 특수 술기 진료 _150_건 이상
교육내용	1.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4. 인성교육
학술대회 참석	교육회기 첫 1년 동안 대한소아소화기영양 인정학회 또는 관련학회(별표1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년 2회 이상 참석.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4회 참석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③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3일 개정되었다.

④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규정 제 11조 4항 관련)

분과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1. 교육지도자수 : __1_ 명 이상 2. 병상 수 : _500_ 병상 이상 3. 진료시설 : 내시경실 4. 관련 타과 :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 개정되었다.

<별표 6> 경과규정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서류심사 자격인정기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5년이 지난 자로 소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2006 년 9월 1일 현재 소아소화기영양학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2006년 9월 1일 이전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학 분야에서 전임의로 수련을 받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자격인정 시험을 면제하고 소정의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정의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2. 교육지도자의 정의

- 1)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학 분과전문의로서 정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임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소아소화기영양학 분야에서 진료, 교육, 연구에 업적이 있는 자
- 2) 비전임강사나 외래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기준에 합당하여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 16호),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전임의 수련증명서 등을 각 1부씩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과 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시행하지 않는다.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3.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① 연수 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 교육, 학술대회)을 매년 10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술대회를 포함
5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대한소아과학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③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가 정한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연수 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소아과학회 추가
6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 1-1, 1-2).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와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②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별표 1-1, 1-2).	연수 인정학회에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하는 규정
7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4호 개정 및 별지 5호 삭제)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규정으로 통일함
1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세부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7.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 소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이하“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규정”) 제5조 제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소화기영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소아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이하“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제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과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의 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기능 2. 고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② 고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③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관리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3조] 조직 ①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부회장, 총무 이사, 학술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3조]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간사로 구성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일반 위원 0명을 임명하고 일반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선출한다. 단, 차기회장, 총무 임원, 학술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장, 당연직 위원, 일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조직 개편(부위원장 제외, 위원 중에서 간사 1인 선출)
부칙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모든 규정의 부칙에 추가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4조] 조직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③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④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연수교육(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을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평점취득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참조)

[제6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 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 보건)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참조)

[제7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 신경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제3장 참조)

[제8조] 자격인정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c) 연구소 근무

- d) 해외연수
-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3.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한 자.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 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 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 ② 해외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자격인정시험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참조)

[제9조] 시험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참조)

[제10조] 자격인정의 유효 기간

- ① 분과전문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참조)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연수 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 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 교육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각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과학회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 ③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제6조] 연수 교육의 인정 한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 ②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 ③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 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 는 학회 및 학술대회

[제7조] 연수 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 1호 및 제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 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 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 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 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 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신경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 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 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제6조 제2항 참조)는 최대 1일 4평점 이

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만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공저자 5평점, 제3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하고, SCI 등재 논문은 200%로 계산한다.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제12조] 기록 보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 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소아청소년과 신경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을 말한다.
- ④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지도전문의”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제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년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각 연차별 전임의의 정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교육지도

자수 + 1로 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신경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 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교육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수련 내용	기 준
연수 교육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학술대회 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학술대회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제1장 제8조 제2항 참조)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 게재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학술지(제1장 제8조 제4항 참조)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
진료내용	1.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3.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교육내용	1.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가. 신경계 발생 및 해부 나. 신경생리 다. 신경병리 라. 신경약리 마. 발달장애 바. 뇌전증 사. 근육질환 아. 중추신경계 감염 자. 말초신경질환 차. 신경대사질환 카. 자가면역질환 타. 임신기 신경질환

수련 내용	기 준
교육내용	파. 퇴행성질환 하. 기타 신경관련질환 2.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이학적 검사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가. 뇌파 나. 뇌영상검사 다. 뇌유발전위검사 라. 근전도 마. 신경전도검사 바. 안저검사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경진찰 나. 발달검사 다. 요추천자 라. 경막하천자 마. 근육 및 신경 생검 5. 인성교육

[제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상황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임의는 수련 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동시에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인정 기준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 ④ 수련병원은 3차 의료기관 또는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의료기관으로 1명 이상의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제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②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15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 a) 1, 2, 3차 병원에서 근무
 - b) 의학업계 또는 약학 관련업계에서 근무
 - c) 연구소 근무
 - d) 해외연수
 - e) 기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동안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교육회기 기준)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3.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교육회기 1년 이내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2회 이상 또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 동안(교육회기 기준) 4회 이상 참석한 자.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두통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학회	관련학회
한국뇌신경과학회 미국소아과학회 미국소아신경학회 미국뇌전증학회 국제소아신경학회 국제뇌전증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소아신경학회 유럽뇌전증학회 일본소아신경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4.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교육회기 기준)에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연관 학술지에 제1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를 게재한 자.

인정학술지	연관학술지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과학회지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신경학회지 대한뇌전증학회지 대한두통학회지 한국뇌신경과학회지 한국소아감염병학회지 대한주산기학회지 대한신생아학회지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명기된 학술지 이외에 소아신경학과 연관이 있다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5. 다음의 진료내용을 충족하는 자.

- a. 소아신경 질환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b. 소아신경 질환 외래환자 120명 이상
 - c. 타 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 당일 대한소아신경학회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1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 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분과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다.
- ②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동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 ①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

서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채점

채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9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무효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건의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 한다.

[제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정을 따른다.

[제12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평점 계산은 제2장 제11조 참조)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신경학회에 제출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 자격증을 교부한다.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제2장)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1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④ 업무 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조직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수련위원장이 수행하고,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 중 4-6명의 위원을 둔다.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②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 소위원회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

- ①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한소아신경학회는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7조] 행정요원

- ①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1.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1장.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1장.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세부전문을 분과 전문의로 통일함
3	제 3 조 (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신경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제3조] 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신경학에 대한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6	[제7조] 수련병원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추천한다.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7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추천 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7	[제8조] 자격인정 소아청소년 신경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인정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인정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제8조] 자격인정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소아신경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신경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아래 항목 참조)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자격인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 자격인정증을 자격증으로 일괄 변경

3.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3.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칙	3.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2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는 소아신경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를 말한다. ④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지도전문의”란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1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2.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2.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5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②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 또는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제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② 다음 표의 대한소아신경학회 인정학회와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 ③ 대한소아신경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11	[제11조] 평점 ② 연수 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제6조 제2항 참조)는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평점 ② 연수 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 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제6조 제2항 참조)는 최대 1일 4평점 이내에서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소아신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5. 소아청소년과 신경 분과전문의 자격 갱신에 관한 규정	
6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대한소아신경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6. 신생아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신생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학술대회 별도 추가 평점 기준
별표 4)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5)	수련내용
별표 6)	수련병원 지정기준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분과전문의(이하“분과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분과전문의”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특정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조] 의의

신생아 분과전문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대한의학회의 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신생아학회의 분과전문의 관리규정에 따른 수련 과정을 완료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학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한 전문의이다. 단 분과자격은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4조] 조직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위원장)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②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연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제 6조] 수련

- ①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학회가 추천하여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신생아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별지 서식 16-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임용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신생아학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가 수련병원으로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신생아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실무라 함은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무함을 뜻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자격 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9조] 시험

- ①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신생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신생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수련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 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각 교육회기에 학회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과학회
2. 대한신생아학회 및 지부학회
3.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별표 1의 인정학회 및 지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대한신생아학

회장은 대한신생아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평점카드 교부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1조] 평점

- ① 평점인정범위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및 대한주산의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와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과학회에서 발행한 연수평점카드 혹은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평점을 반영한다. 단, 학술대회는 제11조②항 참조.
- ④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에 의한 평점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평점카드에 의한다. 단, 국제학회의 경우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 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제 12조] 기록 보관

관리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조] 보칙

- ①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분과 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신생아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4.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 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별지 서식 16-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전임의 정원

1.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별표 4에 따른다.
2.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분과전문의 수련은 신생아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신생아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분과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 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5조에 규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용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 할 수 있다.

[제 8조] 수련 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사항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 수련을 할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제 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및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2. 분과전문의 수련 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관리위원장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실무라 함은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병원에서 근무함을 뜻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신생아 전문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⑥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시험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에 관하여 시험 3개월 전에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분과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 6조] 시험위원의 선출

- ①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 ① 시험문제의 출제, 선택 및 교정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8조] 채점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 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9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2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신생아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신생아학회에,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1.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평점) ②참조,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점 이수 내역)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 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 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8조] 보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 조 제1항에 규정된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④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조] 조직

-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위원장)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조] 회의

-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5조] 소위원회

- ①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American Pediatric Society-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PS-SPR),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Federation of Asia and Oceania Perinatal Society (FAOPS) 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ESPR), European Society for Neonatology (ESN), European Congress of Perinatal Medicine (ECPM), European Academy of Paediatrics (EAP) 일본신생아학회, 일본미숙아학회, 일본주산기학회, 일본소아과학회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ASPR) Perinatal Society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PSANZ) 그 외,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 세계 및 지역별 신생아 및 주산기 관련학회

<별표 2> 논문평점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

소아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생아학회지 (Neonatal Medicine)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Childhood Kidney Diseases)
 소아심장 (Korean Circulation Journal)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Clinical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and Nutrition)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 Metabolism)
 대한의사협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주산의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소아감염 (Pediatric Infection & Vaccine)
 SCI 혹은 SCI(E)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그 외,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지
 게재 예정 증명서 제출도 가능

<별표 3> 학술대회 별도 추가 평점 기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1조 제 2항 관련)

학술대회명	추가 평점	총 평점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대한신생아학회 춘계학술대회	2	5
추계학술대회	2	5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별표 4> 전임의 정원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분과	전임의 정원 기준
신생아	전임의의 총 정원은 교육지도자당 2명으로 한다. (단, 총 정원이라 함은 1, 2년차를 모두 합한 정원을 말한다.)

<별표 5> 수련 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제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기간* 중 제1 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기간* 중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2 참조)에 신생아학 관련 논문을 제1저자로 원저 1편 이상 게재 혹은 게재 예정 증명서
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 수련기간* 중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2) 수련기간* 중 외래환자 추적진료 20명 이상 (3) 수련기간* 중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4) 수련기간* 중 극소저체중출생아 진료건수는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신생아학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신생아학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생아 소생술 나. 인공호흡기 조작 다. 흉막천자 및 흉관 삽관술 라. 기관 삽관술 마. 계면활성제 기관내 투여 바. 비-위관, 구-위관 삽관 사. 신생아집중감시장치 조작 아. 제대혈관도관술 자. 뇌초음파 판독 차.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촬영 사진 판독 카. 광선치료 파. 발달검사 (4) 인성교육
학술회의	수련기간*중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연 2회 이상 참석

*수련기간이란 대한신생아학회로부터 승인된 지정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함

†시행세칙 참조

<별표 6> 수련병원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 (2) 병상수 : 3차 기관 혹은 신생아학회가 인정하는 2차 기관
- (3) 신생아집중치료실 시설 및 장비 : 인공환기기, 보육기
- (4) 검사시설 (24시간 가동 중인 기구 비치) : 혈액가스분석, 혈당측정기,
흉부 방사선 촬영기(CXR), 초음파
- (5) 연관된 타과(전문의)의 존재여부 : 흉부외과, 외과, 소아심장(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 (6) 연간 극소저체중출생아 입원환자수 20명 이상, 신고 병상수 10개 이상

†시행세칙 참조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2016. 3. 1)

1.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학 분야의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3조 (의의)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학 분야의 임상·학제적 능력이 탁월함 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2	제 4조 (조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제 4조 (조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위원장)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제 5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② 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학술 및 연수교육 ② 학회가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별표 1)	
4	제 6조 수련 ④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수련 ④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별지 서식 16-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 7조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 7조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6	제 8조 자격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제 8조 자격 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조항	현행	개정	비고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7	제 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① 자격인증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제 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신생아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별표 1의 인정학회 및 지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와 별표 1의 인정학회 및 지부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제 11조 평점 ① 평점인정범위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과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및 대한주산의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에 의한 평점 증빙은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평점카드에 의한다. 단, 국제학회의 경우 참석확인증(certification),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 11조 평점 ① 평점인정범위는 학술대회, 연수교육,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 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인정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및 대한주산의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④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참석에 의한 평점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서 또는 별지 제5호 평점카드에 의한다. 단, 국제학회의 경우 참석확인증(certification),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2조 정의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추가
2	제 4조 수련기간 ③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 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수련기간 ③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 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 증명서(별지 서식 16-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 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신생아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 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②,③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신생아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대한소아과학회 지정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받은 자 또는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로서 수련 이후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신생아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자격시험 과목은 신생아 전문과목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⑥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와 [제9조]는 삭제하고 그 내용은 [제3조]에 추가
3	제 4조 수험절차 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조]는 삭제하고, 그 내용은 [제3조]에 추가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제 9조 시험문제 및 배점 1차 필기시험과 2차 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9조]는 삭제하고, 그 내용은 [제3조]에 추가
4	제 11조 합격자 결정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9조 합격자 결정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6	제 13조 문제관리 ① 자격시험 문제의 관리는 문제은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관리는 관리위원장 책임 하에 소정의 보관함에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되 그 중 한 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한 개는 간사가 각각 보관한다.	삭제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신생아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세부전문의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세부전문의의 자격 인정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신생아 세부전문의의 인정증 사본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분과전문의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고,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신생아 분과전문의의 자격증 사본	
2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 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 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3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인정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한신생아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3조 조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제 3조 조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학술위원장, 조사통계위원장, 수련교육위원장, 총무 위원장) 외 위원장이 선임하는 학회 운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총무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 1인을 선출한다.	추가
2	제 4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4조 회의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1, 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한국소아감염병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소아신경학회
	American Pediatric Society–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 (APS–SPR),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Federation of Asia and Oceania Perinatal Society (FAOPS) Europe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ESPR), European Society for Neonatology (ESN), European Congress of Perinatal Medicine (ECPM), European Academy of Paediatrics (EAP) 일본신생아학회, 일본미숙아학회, 일본주산기학회, 일본소아과학회 Asian Society for Pediatric Research(ASPR) Perinatal Society of Australia & New Zealand (PSANZ) 그 외,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전 세계 및 지역별 신생아 및 주산기 관련학회

<별표 2> 논문평점인정 학술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관련)

소아과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생아학회지 (Neonatal Medicine)
 대한소아신경학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지 (Childhood Kidney Diseases)
 소아심장 (Korean Circulation Journal)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지 (Clinical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 Gastroenterology and Nutrition)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Annals of Pediatric Endocrinology & Metabolism)
 대한의사협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주산의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rinatology)
 소아감염 (Pediatric Infection & Vaccine)
 SCI 혹은 SCI(E)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등재 학술지
 그 외,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지
 게재 예정 증명서 제출도 가능

<별표 3> 학술대회 별도 추가 평점 기준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 제 11조 제 2항 관련)

학술대회명	추가 평점	총 평점
대한소아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대한신생아학회 춘계학술대회	2	5
추계학술대회	2	5
대한주산의학회 추계학술대회	2	4

<별표 5> 수련 내용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 10평점 이상 (학술대회 참석평점 제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기간* 중 제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논문제출	수련기간* 중 대한신생아학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2 참조)에 신생아학 관련 논문을 제1저자로 원저 1편 이상 게재 혹은 게재 예정 증명서†
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 수련기간* 중 입원환자 진료 100명 이상 (2) 수련기간* 중 외래환자 추적진료 20명 이상 (3) 수련기간* 중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4) 수련기간* 중 극소저체중출생아 진료건수는 20건 이상
교육내용	(1) 신생아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2) 신생아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가. 신생아 소생술 나. 인공호흡기 조작 다. 흉막천자 및 흉관 삽관술 라. 기관 삽관술 마. 계면활성제 기관내 투여 바. 비-위관, 구-위관 삽관 사. 신생아집중감시장치 조작 아. 체대혈관도관술 자. 뇌초음파 판독 차.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촬영 사진 판독 카. 광선치료 파. 발달검사 (4) 인성교육
학술회의	수련기간*중 신생아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연 2회 이상 참석

*수련기간이란 대한신생아학회로부터 승인된 지정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함

†시행세칙 참조

<별표 6> 수련병원지정기준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 (2) 병상수 : 3차 기관 혹은 신생아학회가 인정하는 2차 기관
- (3) 신생아집중치료실 시설 및 장비 : 인공환기기, 보육기
- (4) 검사시설(24시간 가동 중인 기구 비치) : 혈액가스분석, 혈당측정기,
흉부 방사선 촬영기(CXR), 초음파
- (5) 연관된 타과(전문의)의 존재여부 : 흉부외과, 외과, 소아심장(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소아신경(과)
- (6) 연간 극소저체중출생아 입원환자수 20명 이상[†], 신고 병상수 10개 이상

[†]시행세칙 참조



7.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2005. 6. 15 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 이수 기준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대한소아신장학회가 추천하며,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분과전문의 수련기관에서 소아신장학 전문 분과의 소정의 수련을 완료하고 소아청소년과 신장 환자의 전문 진료 능력과 소아신장학의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부전문가를 의미한다.

[제 3조] 의의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신장학 분야의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 ①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이사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총무이사는 당연직 부위원장, 학술이사와 수련이사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 ③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소아신장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학회는 연수강좌 및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한다.
- ② 평점을 위한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는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에서 시행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별표 1>에서 정한다.

[제 6조] 수련

- ①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과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3, 4>에서 정한다.

[제 7 조]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대한소아과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교육을 위한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과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련병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에서 정한다.

[제 8 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 <별표 4>에서 정한다.

[제 9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 ①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 전문의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 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 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2.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2)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3) 각 분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표 31> 에서 정한다.

[제 6 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고하며,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제 7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소아신장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 10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 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수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2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1일 3평점,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일 최대 4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⑦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학술지는 <별표 2>에서 정한다.

[제 11조] 기록 보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

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세분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신장분과의 전임으로 근무하는 분과전문을 말한다.
-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제 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 병원에서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3, 4>에서 정한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교육지도자수 + 1] 로 한다.
- ② 위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수련의 목표 및 내용

- ① 수련목표 : 소아청소년과 신장 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타 분야 의료인에 대한 자문과 지도 및 소아신장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전문을 양성함을 그 목표로 한다.
- ② 구체적 수련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6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겸직 및 중복수련 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해당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각 수련병원의 해당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분과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년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에서 정한다

[제 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②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각 분과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표 4>에서 정한다.

[제 3 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신장학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 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 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분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해당 분과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 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은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정한다.

[제 7 조] 채점

채점은 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1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 ② 갱신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사정을 거쳐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해당 전월말까지 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 1)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6 조 및 제 11 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연도 이후 3년간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8 조] 보칙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에 규정된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2)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구성)

- ① 위원장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이사가 맡으며, 회무를 총괄하고,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②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학술이사와 교육수련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조 (회의)

- ①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소아신장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5 조 2항 관련)

인정학회	관련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병리집담회 인정)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소아배뇨장애아뇨증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소아비뇨기과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대한전해질고혈압학회 대한고혈압학회 한일중소아신장학회(Korea Japan China Pediatric Nephrology Seminar) 국내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수강좌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Asian Congress of Pediatric Nephrology (ACPN) International Pediatric Nephrology Association (IPNA)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Nephrology (ASN) European Dialysis and Transplantation Association (EDTA) Europe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ESPN) Asian Pacific Congress of Nephrology (APCN) Americ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ASPN) International Congress of Nephrology (ICN) Society of Pediatric Research (SPR) Asian Society of Pediatric Research (ASPR) World Congress of Nephrology (WCN) International Podocyte Conference	상기 명시된 학회 이외에 소아신장과 연관 있다고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인정한 학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학술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0 조 7항 관련)

아래에 해당되는 신장 및 요로관련 잡지 게재 논문 혹은 기타 잡지에 게재된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에 한하여 평점을 인정한다.
1) 대한소아신장학회지 / Chronic Kidney Diseases
2)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혹은 등재 후보 국내잡지
3) SCI(Science Citation Index) 혹은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tended)에 등재된 학술지
4)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5)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6) 기타 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련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관련)

분과명	전임의 인정 기준
소아신장	교육지도자수 + 1

<별표 4> 수련 내용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5항 관련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5항 관련)

수련 내용	기준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참석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서 제 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를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제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소아신장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장학회지 혹은 SCI, SCIE 등재잡지에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으로, 제1저자로 최소한 1편 이상의 원저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기간 중 총 진료 수 (1년기준)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2) 외래환자 진료 100명 이상 (3) 타과와의 진료상담 10건 이상

수련 내용	기준
교육내용	(1)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① 신장생리 ② 신장병리 ③ 급성신부전 ④ 만성신부전 ⑤ 급, 만성 사구체신염 ⑥ 신증후군 ⑦ 신세뇨관 질환 ⑧ 유전성 신질환 ⑨ 고혈압 ⑩ 요로결석 ⑪ 요로감염 ⑫ 요로계 기형 ⑬ 요로계 영상검사 ⑭ 야뇨증 및 배뇨장애 ⑮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이식) (2)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① 신기능검사 ② 요검사 ③ 일반화학 및 혈청면역학적 검사 ④ 요로계 영상학 검사 ⑤ 요로계 핵의학 검사 ⑥ 신장병리검사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① 신대체요법 (해당분야의 실습이 가능한 병원 파견근무도 인정) ② 신생검 (5) 인성교육
학술회의	수련기간 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회의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별표 5> 수련병원 지정 기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11조 4항 관련)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2. 규모 :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최소 기준은 종합병원 급 이상의 규모로 기본 교육시설을 갖춘 소아과전문의 수련기관으로 한다.
3. 기본 교육시설
 - 1) 신조직병리검사실
 - 2) 신,요로계 영상검사실
 - 3) 신대체요법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1. 소아신장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제 4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①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이사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회장에 의해 임명되고, 총무이사는 당연직 부위원장, 학술이사와 수련이사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제 4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①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장 산하에 다음과 같은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이사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고, 총무이사는 당연직 부위원장, 학술이사와 수련이사는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간사 1인을 임명한다.	이사장제도 변경

2. 소아신장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제 5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②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표 3> 에서 정한다.	제 5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①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소아신장학회의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3) 각 분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②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는 <별표 1> 에서 정한다.	
10	제 10조 (평점)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1일 3평점,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일 최대 4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0조 (평점)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수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2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는 1일 3평점,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일 최대 4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3. 소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제 2조 (정의)	제 2조 (정의)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추가
4	제 4조 (수련기간)	제 4조 (수련기간)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추가
11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 ③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5. 소아과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해당 전월말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부전문의 인정증 사본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해당 전월말까지 학회에 제출하며, 분과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승인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6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연수교육 혹은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②항에 세부사항 추가
7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자격시인정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연수교육 혹은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②항에 세부사항 추가

6.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제 4 조 (회의) ①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의) ①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회의는 대한소아과학회 학술이사, 총무이사, 교육이사, 고시이사가 빠지면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3	제 3 조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대한소아신장학회 회장이 임명하는 대한소아신장학회 세부전문의 이사가 맡으며, 회무를 총괄하고,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술이사와 수련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3 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대한소아신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하는 대한소아신장학회 분과전문의 이사가 맡으며, 회무를 총괄하고,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총무이사가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학술이사와 교육수련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이사장제도 변경

7. 별표 목록

조항	현행	개정	비고
별표1	<별표 1>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별표 1> 연수교육을 인정하는 인정학회와 관련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 (병리집담회 인정) 한일중소아신장학회(Korea Japan China Pediatric Nephrology Seminar) Asian Congress of Pediatric Nephrology (ACPN) American Society of Pediatric Nephrology (ASPN)	추가, 수정
별표2	<별표 2> 논문평점 인정학술지	<별표 2> 논문평점 인정학술지 (소아청소년과 신장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 10 조 7항 관련) 1) 대한소아신장학회지/Chronic Kidney Diseases	잡지명 변경
별표4	<별표 4> 수련 내용 논문제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소아신장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장학회지 혹은 SCI, SCIE 등재잡지에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으로, 제1저자로 최소한 1편 이상의 원저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별표 4> 수련 내용 논문제출: 수련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소아신장학회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대한신장학회지 혹은 SCI, SCIE 등재잡지에 신장 및 요로관련 논문으로, 제1저자로 최소한 1편 이상의 원저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2000. 9. 1 제정
2004. 8. 10 개정
2005. 4. 15 개정
2011.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2.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6. 기타 분과전문의 관련 규정

-
- 1)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 규정
 - 2) 기타 규정
 - 3) 별도 규정

수련내용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분과전문의”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에서 소정의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로서 해당 진료 영역의 세밀한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타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 협동 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제 3조] 의의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임상의학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 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4조] 조직

-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5조] 학술 및 연수교육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교육회기에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회는 별도로 정한다.

[제 6조] 수련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 ②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호-2에 해당하는 파견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조] 수련병원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의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별도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 병원 지정을 추천 하고 대한소아과학회는 이를 지정한다.
- ③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조] 자격 인정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

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2. 수련 개시일로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9조] 시 험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

①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②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조] 자격증의 표방

자격증은 자격증 자체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표방할 수 없다.

[제 12조] 보칙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제 13조] 자격 정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회수하고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을 취소한다.

① 자격증 표방금지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② 재평가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경우.

③ 분과전문의의 직분을 훼손한 경우.

④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정규수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④ 기타 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학술 활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 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 ① 연수교육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의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교육기관

연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① 대한소아과학회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 ③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및 인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
 2.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교육, 실습 및 학술대회
- ② 인정학회(의학회 평점 인정 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및 지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및 지회, 천식 알레르기학회 및 지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류마치스학회, 대한중환자학회
- ③ 해외 학회
미국알레르기학회(AAAAI/ACAAI), 미국호흡기학회(ATS), 유럽소아알레르기학회, 유럽소아호흡기학회, 유럽알레르기학회, 유럽호흡기학회, 일본소아알레르기학회, 한일알레르기심포지엄, 서태평양알레르기심포지엄, 국제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 아시아태평양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및 면역학회(APAPARI), 세계 알레르기 학회(WAO)

④ 관련학회

2항의 인정 학회 이외의 학회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학회, 연수교육 또는 실습 등은 대한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평점 인정을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한다.

[제 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이사장이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홈페이지에 교육의 종류, 일정 및 평점을 공지한다.

[제 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료,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및 실습 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 및 연수교육 이수자 명부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평점카드 교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제 11조] 평점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학술 대회,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각 분과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 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⑤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 학술대회에서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⑥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⑦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해 10 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⑧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학술 논문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학술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학협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2. 국외학술지: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

[제 12조] 기록 보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를 말한다.
-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제 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이 규칙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수련기간

- ①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 ③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 수련을 받아야 하며, 별지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 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임의의 정원, 수련 내용과 과정, 수련 규칙 및 기록, 임용 보고와 기타 수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5조] 전임의 정원

- ①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교육지도자수 +1]로 한다.
- ② 단, 이 인원은 대한소아과학회의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6조] 수련의 교육목표 및 내용

- ① 분과전문의 수련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 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의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 ② 수련내용
 1. 급, 만성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과 관리, 진단과 치료
 2. 중증 호흡기 질환의 진단과 치료
 3. 면역 질환의 진단과 치료
 4. 만성 또는 중증 환자의 관리를 위한 인성 교육

[제 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 ①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 ②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 할 수 있다.

[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 집담회 기록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보고

- ①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기록 카드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 이수자 명부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 ②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 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에 원저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을 발표한 자.
- ② 교육환경의 확충: 분과전문의 수련에 필요한 전임의 및 시설과 장비 등 학회가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수련내용의 보관: 다음의 내용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련계획서: 학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초로 작성
 2. 수련기록지: 분과전문의로서 필요한 술기에 관한 교육내용
 3. 학술집담회 회의록: 원내외 집담회 참석과 발표내용의 기록
 4. 근무기록지: 출퇴근 및 진료업무 일지의 작성

[제 11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 ① 전임의는 수련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받을 수 없다.
- ② 국방의무를 복무 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①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는 별지 제12호 및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당해 연도 2월말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 ④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4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을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지정서를 갱신하여 교부하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 ②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 ③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④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6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규정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수련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최근 5년 동안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지(국문 또는 영문 학술지)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의학 잡지에 분과전문의에 관련된 내용의 원저 2편 이상을 주저자(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발표한 자.
 3. 동일한 논문은 한 명에 한해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며 같은 목적으로 2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4.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 과목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④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 ②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③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임의 수련이수증명서
- ④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⑤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⑥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 ⑦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 ⑧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 ⑨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 ⑩ 학술 업적: 논문 및 학회 발표 목록 및 증빙 자료
- ⑪ 학회 활동: 회비완납 증명서, 업무 위원회 활동 증명서 등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 ①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시험문제의 관리

- ① 출제와 시험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한 다음 위원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1. 출제위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문제를 출제한다.
 2. 고시위원: 출제된 문제에서 당해 연도 문제를 선택하고, 시험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
- ② 문제의 보관: 당해 연도 시험문제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 ③ 문제은행: 당해 연도에 출제된 문제는 시험 후 공개하며, 동시에 문제은행에 저장한다. 문제 은행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8조] 채점

- ① 채점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고시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9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 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그 이유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 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2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5년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 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5평점, 공저자인 경우는 3평점으로 계산하고, 종설 및 증례 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② 갱신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평점 취득 의무를 면제한다.
- ③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 전까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 ②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 ③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 ④ 논문목록 및 증빙서류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 후 2년까지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 후 3년까지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 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제 8조] 보칙

- ①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필요에 따라 관련학과의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분과 분과전문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격과 관련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정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기타 분과전문의 관련 규정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관리규정>

<기타 규정>

<별도 규정>

수련내용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분과전문의제도의 운영을 위한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① 평의회에서 승인된 분과전문의 제도의 관리 운영
- ② 고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조] 조직

- ①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 ③ 위원의 구성: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일반위원 및 간사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각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고시이사, 교육이사, 학술이사, 총무이사
 2. 일반직 위원: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2명 내외로 선임한다. 단, 선출된 위원은 반드시 학회 평의원이어야 한다.
 3. 간사: 위원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1명을 위원장이 간사로 선출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 한다.

[제 4조] 회의

-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5조] 소위원회

분과전문의자격시험을 위해 출제소위원회와 고시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위원회 관리는 고시이사
가 담당한다.

- ① 출제소위원회: 시험문제의 출제 및 관리를 담당한다.
- ② 고시소위원회: 당해 연도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 감독 및 채점을 담당한다.

[제 6조] 재정

- ① 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비와 특별경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 ② 회비와 특별경비는 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제 7조] 행정요원

- ①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 ② 행정요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규정

분과전문의제도의 추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행규칙을 추가 작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 교육지도자의 관리규정

별도 규정

별도규정은 분과전문의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지만, 시행규칙에 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별도규정-01: 수련내용

분과전문의를 위한 수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내용: 아래의 진료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1) 입원환자: 알레르기 호흡기계 질환 20종 이상
 - 2) 외래환자: 만성질환의 추적진료 20례 이상
 - 3) 응급환자: 응급질환 처치 20례 이상
 - 4) 중환자관리: 중환자실 관리 5례 이상
 - 5) 타과 협진: 15례 이상
2. 검사판독능력: 교육지도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1) B-세포 기능검사
 - 2) T-세포 기능검사
 - 3) 특이항체검사
 - 4) 기타 면역기능검사
3. 검사 수기의 습득 및 판독능력: 교육지도자의 확인을 받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1) 알레르기 피부시험: 30건 이상
 - 2) 폐기능 검사: 30건 이상
 - 3) 고해상도 단층촬영: 20건 이상
 - 4) 천식유발검사: 메타콜린 및 운동 유발검사 20건 이상
 - 5) 기관지경 검사(권장사항, 평가 시 고려)
 - 6) 식품 및 약물 알레르기유발검사(권장사항, 평가 시 고려)
4. 치료 수기의 습득 및 효과판정: 교육지도자의 확인을 받은 기록이 보관되어야 한다.
 - 1) 흡입요법의 교육: 50건 이상
 - 2) 식품가감요법: 10건 이상
 - 3) 면역요법의 대상선정과 부작용에 대한 대처 능력: 3건 이상
 - 4) 기계적 환기요법: 5건 이상
 - 5) 흉막 천자 또는 생검술(권장사항 평가 시 고려)

5. 인성교육: 교육지도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 1) 장기치료환자의 선정
- 2) 공인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교육

별도규정-02: 수련병원의 세부지정기준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가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1.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중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중환자실 및 간호사
2. 면역질환의 진단을 위한 기본 및 정밀 검사가 가능한 검사실 및 기사
 - 1) B-세포 기능검사
 - 2) T-세포 기능검사
 - 3) 특이항체검사
 - 4) 기타 면역기능검사
3. 다음과 같은 검사가 가능한 알레르기 호흡기 검사실 및 인력
 - 1) 알레르기 피부시험
 - 2) 식품, 향원 및 약물 알레르기유발검사
 - 3) 폐기능 검사
 - 4) 천식유발검사: 메타콜린 및 운동 유발검사 등
 - 5) 전산화 단층촬영
 - 6) 기관지경 검사(권장 항목임)
4. 다음과 같은 시술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1) 흡입요법
 - 2) 면역요법
 - 3) 기계적 환기요법
 - 4) 흉막 천자술
 - 5) 폐생검(권장 항목임)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016. 3. 1.)

1.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제도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	[제 3조] 의의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 될 수 없다.	[제 3조] 의의 분과전문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야의 임상·학제적 자질과 능력이 탁월함 을 학회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 과목의 표방에 사용 될 수 없다.	
2	[제 6조] 수련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행한다.	[제 6조] 수련 ④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 한다.	
3	[제 7조] 수련병원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조] 수련병원 ④ 수련 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 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 해야 한다. 지정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는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제 11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학술 대회,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⑧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학술 논문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학술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학협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2. 국외학술지: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	[제 11조] 평점 ① 평점 인정 범위는 학술 대회, 연수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한다. ②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 학회공식 명찰 또는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⑧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인정하는 학술 논문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내학술지: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천식 및 알레르기, 대한의학협회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 대한면역학회지, 대한류마티스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2. 국외학술지: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회가 발행하는 의학 잡지	

3.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②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을 말한다. ④ “분과지도전문의”란 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6	[제 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에 원저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을 발표한 자.	[제 10조] 교육지도자의 자격 및 역할 ① 교육지도자의 자격: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로서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5년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에 원저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 2편 이상을 발표한 자.	
7	[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 12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③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변동사항이 없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련병원 지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8	[제 2조]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응시자격은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대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2008년도 이후(2008년도 포함) 전임의 수련 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에는 전임의 수련 시작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주저자 2편(단, 이중 1편은 AAIR의 주저자도 가능) 이상을 발표한 자. 3. 2007년도 이전(2007년도 포함) 전임의 수련 후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에는 전임의 수련 시작 이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원저 2편 이상(단, 최소한 1편은 주저자)을 발표한 자. 4.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2조] 응시자격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① 혹은 ②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시험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2. 최근 5년 동안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학회지(국문 또는 영문 학술지)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의학 잡지에 분과전문의에 관련된 내용의 원저 2편 이상을 주저자(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발표한 자. 3. 동일한 논문은 한 명에 한해 자격요건으로 인정되며 같은 목적으로 2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4.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③ 응시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각 분과학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9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년까지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2년까지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10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3년까지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부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세부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인정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①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갱신 대상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3년까지 자격 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학회에서 정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부칙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③ 정규수련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작한다. ④ 기타 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③ 정규수련은 2006년 3월 1일 부터 시작한다. ④ 기타 규정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9.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

2005. 6. 15 제정
2007. 6. 16 개정
2007.10. 9 개정
2008.10. 개정
2010. 3. 1 개정
2012. 3. 1 개정
2016. 3. 1 개정

1.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3.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규정
4.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
5.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6.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7.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별표 2)	논문 평점 인정 학술지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별표 4)	수련내용
별표 5)	수련병원 지정 기준
별표 6)	경과규정
별표 7)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1.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제도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제도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학을 전공하는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 임상 의사를 양성하여 환자 진료,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그 배경 및 필요성은 하기와 같이 요약된다.

1. 학문적 측면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학 발전에 따른 습득하여야 할 전문지식의 지속적인 증가
- 의학의 세분화, 초 세분화 경향

2. 의료 기술적 측면

- 진료용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
- 새로운 항암제 및 신약의 개발
- 조혈모세포이식의 급속한 발전 및 보급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영역에서 술기 습득 필요성 증대

3. 질병 양상의 변화와 인구 구조의 변화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질환의 증가
- 완치율의 향상 및 장기생존자에 대한 관심 고조

4. 국민의 의료욕구 추이의 변화

- 복지 건강 사회의 지향
- 양질의 수준 높은 전문적 의료 서비스 욕구 증가

5. 현실적 측면

- 교육 병원에 근무하는 교육지도자의 대다수가 분과 해당 업무를 수행
- 대한소아과학회의 학술활동도 분과별로 수행되고 있는 현실

2.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자격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의의)

분과전문의의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학 분야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임상·학술적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대한소아과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본 자격은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수 없다.

제 3조 (조직)

1.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교육이사가 수행하고, 총무이사, 학술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4.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수련)

1.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전임의(이하 “전임의”라 한다) 수련을 받아야 한다.
2. 전임의의 정원, 수련기간, 수련내용과 과정, 수련규칙 및 기록,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 수련병원으로 지정 추천한다.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자격 인정)

1. 자격 인정 방법

- (1) 자격 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2) 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 (3) 자격 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1) 혹은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 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수련 개시일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 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 7 조 (시험)

1. 분과전문의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대상)

연수교육의 대상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감독 하에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가 주관 실시한다.

제 4조 (교육회기 및 교육시간)

1. 연수교육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2. 각 교육회기에 하기 제6조 제 1항 제 1호의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를 매년 10평점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5조 (교육기관)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2. 대한소아과학회
3.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 6조 (연수교육의 인정 한계)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연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
2.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제 7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1. 관리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교육회기의 연수교육 계획서를 대한소아과학회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소아과학회에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연수교육 계획서에 누락되었거나, 신설된 연수강좌는 시행 계획서 혹은 시행 내역 서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 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학회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제 8조 (등록 및 등록비)

연수강좌 및 실습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받으며, 연수교육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9조 (평점카드 교부)

분과 학회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제 10조 (평점)

평점 인정은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수교육

-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 학회는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국제학회는 참석확인증, 학회공식 명찰, 등록영수증(사본 가능) 등 학회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인정된 연수교육 참석에 대한 증빙은 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으로 증빙할 수 있다.
- ④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학술대회에서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는 1 평점을 부여하고, 제 1발표자 혹은 책임저자는 1 평점을 가산한다.
- ⑤ 논문에 의한 평점 인정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책임저자, 1인 단독저자는 10평점, 공저자인 경우 제2 공저자 5평점, 제3 공저자 이상은 3평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는 원저 평점의 50%로 계산한다.
- ⑥ 최소 1년의 전임의 교육회기 동안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교육을 통해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1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후 분과관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수교육 결과보고서를 회기 말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기록 보관)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라 함은 수련병원에서 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라 함은 대한소아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학 분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을 말한다.

제 3조 (수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으로 하며, 군복무, 병가, 출산 및 기타 이유에 의한 수련기간의 단축은 연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련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 또는 군 대체근무(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 군복무를 마치는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3. 교육지도자 부재 시 수련기간 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규정을 엄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간을 수련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 (1)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개월 이내 : 유예 기간으로 보고서 등으로 교육을 대체한다.
 - (2)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3-6개월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에서 파견수련을 받아야 하며, 서식 16-2호에 해당하는 파견수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교육지도자 부재기간이 6개월 이상 : 교육지도자가 있는 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여 수련하고, 각각의 수련병원에서의 서식 16-1호에 해당하는 전임의 수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의 정원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정한 기준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인준을 받도록 한다.

제 6조 (수련과정)

수련내용과 과정 및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목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지역사회에 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 7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 5조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임의를 해임할 수 있다.

제 8조 (수련규칙 및 기록의 비치)

1.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규칙 및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1) 전임의의 지도, 감독에 관한 규칙
 - (2)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
 - (3)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의 수련과 관련된 학술집회 기록
2. 제 1항의 제 2호와 제 4호의 서류는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임의 임용보고)

1.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말까지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상황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전임의 명부
 - (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수련이수자 전임의 기록카드
 - (3)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 (4)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당해 년도 교육지도자 명부
2.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겸직 및 중복수련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타 분과의 중복수련을 할

수 없다.

2. 국방의무를 복무중인 자는 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14호 서식에 의하여 본 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 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14조 (수련병원지정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 취소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분과전문의 수련규칙 및 기록이 미비할 때
3.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4. 수련병원의 심사 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제 15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응시자격)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2항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제 3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1. 자격시험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전문과목으로 한다.
2.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3.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4. 1차 시험 당일 자체 인정 후 2차 시험 진행이 가능하나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회 1,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여야 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5조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15호 서식)
2.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부 전임의 수련증명서 및 증빙 서류 사본
4.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 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5.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6.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기록부 사본(원본 대조필)
7.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전임의 수련평가서(소아청소년과 책임자 또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전임의 수련책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8. 세부전문분야 실무경력증명서(혹은 재직증명서)
9.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명함판)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7조 (채점)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8조 (합격자 결정)

1.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이 확정 발표한다.
2.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하며, 시험의 합격 결정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 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1. 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한다.
2.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 11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로 한다)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

1.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최근 5년 간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소정의 연수교육 및 논문평점 100평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점 취득의 의무를 면제한다.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외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에서 개별 심사 후 그 결과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갱신 교부하며, 교부 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을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1개월 전 까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제출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자격갱신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추천하고,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의 승인 후 자격증을 교부받는다.

1.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2.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 및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
3.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 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을 위해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이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시험응시 요건으로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제 8조 (보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조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조직)

1.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교육이사가 수행하고, 총무이사, 학술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4.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3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 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5조 (회의)

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6조 (소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행정요원)

1.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별표 목록

<별표 1> 연수교육의 인정한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 관계)

1.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및 실습
2.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인정학회와 관련학회에서 주관하는 연수강좌, 실습 및 학술대회

<별표 2> 논문평점 인정 학술지 및 인정학회, 관련학회의 범위(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0조 제 2항 관계)

인정학술지

- 임상소아혈액종양 (Clinical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 Hematology Research
-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 The Korean Journal of Blood Transfusion
- 대한면역학회지(Immune Network)
-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학술지
-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
- 상기 이외의 학술지는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인정학회

-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 대한소아과학회
- 대한혈액학회
-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 대한면역학회
-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 대한수혈학회
- 대한암학회
- 대한소아내종양학회
- International Society of Hematology (ISH)
- ISH-APD congress
- SIOP
- APBMT meeting
- European Society of Hematology(ESH)
-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ASH)
- EBMT

- IBMTR
- Cord Blood Meeting

관련학회

명기된 학회 이외에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연관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를 관련학회로 한다.

<별표 3> 전임의 정원 기준

교육지도자수 - 0

<별표 4> 수련내용(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6조 제 2항 관계)

1. 연수강좌 및 실습
수련기간과 실습기간 중 매년 10평점 이상(학술대회 참석평점은 5평점을 넘지 못함)
2. 학술대회, 논문발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 1발표자로서 최소한 1회 이상 구연 혹은 포스터 발표
3. 논문제출
수련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규칙 제 10조 제 2항에 명시된 학술지(별표 2 참조)에 제 1저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
4. 수련기간 중 총 진료환자수
 - (1) 입원환자 진료 50명 이상
 - (2) 외래환자 120명 이상
 - (3) 타과와의 진료상담 20건 이상
5. 교육내용
 - (1)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 (2)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로서 수행하여야 할 전문적인 문진, 진찰
 - (3) 전문검사의 결과 판독 능력
 - (4) 전문 진료수기의 습득과 판독능력
 - (5) 인성교육
6. 학술회의
수련기간과 실습기간 중 매년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수련 및 수련병원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2조 제 2항 관계)

- (1) 교육지도자 수 : 1명 이상
- (2) 병상수 :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2차 및 3차 의료기관

<별표 6>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경과 규정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야의 진료, 교육,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에서 다음 각 항에 해당 분들은 경과규정의 일환으로 자격 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의 정의

현시점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

2. 교육지도자

1) 대학병원

- (1) 정규 조교수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교육지도자
- (2) 의과대학을 정년퇴임했을 경우 명예교수, 석좌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교육지도자
- (3) 외래강사나 외래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비 대학 수련병원

- (1) 대학병원의 정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
- (2) 해외수련병원에서 취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는 교육지도자 연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수련병원의 교육지도자로 발령 받은 후 해외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외연수과정을 교육지도자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3) 상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임의로 1년 이상 수련을 하고 현재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의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정한다.

3.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창립 및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

-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창립 및 발전을 위해 헌신 여부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규정 개정안 변경 대비표

(2016. 3. 1)

2.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5	제 3조 (조직) 세부전문의의 수련, 자격인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회장이 되고 총무, 학술이사와 이사 2인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이사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총무이사는 위원회 간사를 겸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3조 (조직) 1.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교육이사가 수행하고, 총무이사, 학술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4.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부회장에서 교육이사로 변경되었음. 총무이사가 간사를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변경됨.
5	제 5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과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5조 (수련병원)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과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및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변경.
6	제 6조 (자격인정) 1. 자격인정 방법 (1)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2) 세부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한다. (3) 자격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 시험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자격인정 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1) 혹은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인정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인정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	제 6조 (자격 인정) 1. 자격 인정 방법 (1) 자격 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제출하고 관리위원회는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수험자격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2) 분과전문의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한소아과학회에서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3) 자격 인정 신청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자격 인정 기준: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규칙은 따로 정한다.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 제(1) 혹은 (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시키는 자격시험 신청자에 한하여 각 분과학회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한 자에게 대한소아과학회는 자격증을 교부하며,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시 소정의 수수료를 징	‘자격인정증’ 및 ‘자격인정 시험’을 ‘자격증’ 및 ‘자격시험’으로 용어를 단순화 함. ‘각 분과’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라고 명칭을 구체화 시킴.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수할 수 있다.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본 학회 정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세부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각 분과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수련 개시일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해외에서 세부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분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인정 신청 시 대한소아과학회 및 본 학회 정회원으로 연속 2년 이상의 회원 경력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학회에서 지정한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 수련 후, 1년 이상 추가 수련을 받거나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인정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수련 개시일부터 첫 1년간 연수강좌, 실습교육, 학술대회를 통하여 1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시험 응시자격 심사 직전 2년간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해외에서 분과전문의 응시요건에 부합되는 전임의 수련을 받거나 해당 자격증을 득한 자로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각 분과’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라고 명칭을 구체화 시킴.
부칙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세부전문의 시험 시행에 한하여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인정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세부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경과규정(2011년 3월 1일 개정 이후 적용되지 않음): 이 규정에 의하여 처음 실시하는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에 한하여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추천을 받아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서류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분과전문의는 한 분야만 인정하도록 한다.	

3.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1	본 규칙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이하 “세부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세부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 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분과전문의의 학술활동 및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을 ‘규정’으로 용어 통일.
3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주관 실시한다.	제 3조 (주관) 연수교육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 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감독 하에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가 주관 실시한다.	
7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아과학, The Korean Journal of Hematology 및 임상소아혈액종양에 공고하며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회기별 종합계획서에 포함된 연수강좌 및 실습 일정은 각 수련병원에 따로 배포한다.	3.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학회지 또는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종류와 일정, 그리고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것을 추가함.
10	제 10조 (평점) 1. 연수교육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 학술대회는 인정 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2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한다. 단 대한소아과학회를 포함한 각 분과가 지정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 10조 (평점) 1. 연수교육 ① 평점 인정 범위는 연수 교육 참석 및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하며, 연수교육의 종류는 연수강좌, 실습 교육 및 학술대회로 하며, KMA 교육센터에서 발행한 이수확인서에 명시된 평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의 교육기관에서 실한 연수강좌 및 실습은 1시간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는 각 분과학회가 주관한 경우 1일당 3평점, 관련 학회가 주관 한 경우 1일당 1평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대한소아과학회와 각 분과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별도로 추가 평점을 부과할 수 있다.	학술대회인 경우 평점 변경.

4.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제 2조 (정의)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 혈액종양학 분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를 말한다.	제 2조 (정의) 3. “교육지도자”라 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학 분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를 말한다.	
9	제 9조 (전임의 임용보고) 2.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 (전임의 임용보고) 2. 각 수련병원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상황 보고를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관리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대상을 명확히 함.
11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임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하여 본 학회에 당해 년도 1월 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본 학회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제 11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아혈액종양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는 별지 제12호 및 14호 서식 에 의하여 본 학회에 당해 년도 1월말까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에 지정을 추천한다.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수련병원의 인정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변동사항이 없거나, 철회하지 않은 경우 5년간 매년 자동 연장되며, 지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인정이 취소된다. 4.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지 서식 13호, 14호 추가
12	제 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2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은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으로 변경.
13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한다.	제 13조 (수련병원의 자격심사 및 갱신)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의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서를 심사 실시 후 2개월 이내에 갱신하여 교부한다.	관리위원회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5.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4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 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1.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과목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은 그 시험기일 3개월 전에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임을 명시.
6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1.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의 상호충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동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6조 (시험위원회 선출) 1.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는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및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촉을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수와 선출방법 등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기존 2항 삭제.
	제 7조 (출제, 선택 및 교정)		7조 삭제
	제 8조 (채점) 1.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2.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상단 봉합상태로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제 7조 (채점)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채점위원이 하며, 채점완료 즉시 확인 날인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답안지 및 채점표를 인계한다.	7조를 삭제함에 따라서 기존 8조가 7조로 변경
	제 9조 (합격자 결정)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 8조 (합격자 결정) 3.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은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증 을 교부한다.	기존 9조가 8조로 변경하고 인정증을 자격증으로 변경.
	제 10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제 9조 (부정행위자의 제재)	
	제 11 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제 10조 (자격인정의 유효기간)	
	제 12조 (보칙)	제 11조 (보칙)	

6.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제 2조 (자격)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외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조 (자격) 3.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해외체류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산하며, 해당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갱신연기를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분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1. 세부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을 위해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2년 이내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인정시험에 의해서만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① 분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자격갱신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이 정지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2년 동안 자격갱신에 추가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년 이내에 자격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는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격 시험 응시 요건으로 시험 응시 전 2년간 연수교육 및 논문으로 20평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다.	
7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세부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 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1. 자격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정지하며 갱신대상 당해년도 이후 3년간 자격갱신에 다시 응할 수 있다. 단 1년 이내 신청하면 120평점을, 2년 이내 신청하면 140평점을, 3년 이내 신청하면 160평점을 이수하거나, 최근 5년간의 평점이 100평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격갱신에 3년간 연속 불합격한 자는 분과전문의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분과전문의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분과전문의자격을 경과규정에 의하여 서류면접으로 취득한 분과전문의는, 자격시험의 응시로 분과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분과에서 정한다.	

7.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

조항	현행	개정	비고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이하 “분과전문의”라 한다)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 4조 1항에 규정된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조직) 1.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교육이사가 수행하고, 총무이사, 학술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위원의 임기는 본 학회의 보직 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4.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3조 (기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분과전문의 제도의 운영, 관리계획 및 업무집행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산하 위원회 업무집행의 조정, 지도, 감독 및 의결사항의 인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리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조 (위원장 및 간사) 1.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간사는 관리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과 회무를 관장한다. 제 5조 (회의) 1.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기존에 없었던 7. 혈액종양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규정집을 신설 추가함. 이로 인해 기존의 ‘7. 별표목록’이 ‘8. 별표목록’으로 변경함.

조항	현행	개정	비고
		2. 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 6조 (소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실시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행정요원) 1. 관리위원회 운영과 실무집행에 필요한 약간 명의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2. 행정요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안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서식	제 목
제1호	연수교육 실시 총괄계획서
제2호	연수교육 실시 세부계획서
제3호	연수교육 등록용지
제4호	연수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5호	연수교육 평점카드
제6호	전임의 수련기록부
제7호	전임의 학술집회 기록
제8호	전임의 명부
제9호	전임의 기록카드
제10호	수련 이수자 명부
제11호	교육지도자 명부
제12호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
제13호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서
제14호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제15호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제16호	전임의 수련증명서 및 파견수련증명서
제17호	연수평점 기록지
제18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제19호	전임의 수련평가서
제20호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연기 사유서
제21호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

_____ 년도 연수교육실시 총괄계획서

실시기관 : _____ 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 : _____ (인)

일시	시간 (시 - 시)	교육방법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교 육 주 제	강좌수	시간	평점
계						

연수교육 등록용지

_____ 학회

성 명	
의 사 면 허 번 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_____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소속 도 · 시 · 군 병원명	

- 1. 참석자는 등록비와 함께 본 용지를 제출하여야 함.
- 2. 본 카드는 정자(인쇄체)로 기입 작성하여야 함.

교육 실시결과 보고서

실시기관 : _____ 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장 : _____ (인)

교육종류	년월일	인원	강의시간	교 육 명 칭	장소	평점	비고

교육종류 :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별지 제 5 호

No. _____ 연수교육평점카드 1. 성명 _____ 2. 의사면허번호 _____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_____ 4.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_____ 5. 교육종류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_____ 6. 교육일시 _____ 년 월 일 _____ 7. 평점 _____ 위 사실을 확인함. _____ 학회 회장(인)	No. _____ 연수교육평점카드 1. 성명 _____ 2. 의사면허번호 _____ 3.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_____ 4.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_____ 5. 교육종류 (연수강좌, 실습, 학술대회) _____ 6. 교육일시 _____ 년 월 일 _____ 7. 평점 _____ 위 사실을 확인함. _____ 학회 회장(인)
---	---

전임의 수련기록부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전임의 성명 :
수 련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 진료환자 수

	월 별 진 료 환 자 수												총환자수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타 과 진 료 상 담													

2. 연수강좌 및 실습

년 월 일	연 수 교 육 제 목	연 수 평 점
총 점		

별지 제 6 호-2

3. 학술대회

년 월 일	학 술 대 회 명(논문제목)	참 석	발 표

★ 논문 발표시에는 학술대회명 아래에 발표 논문의 제목을 기록하고 제 1연자일 때는 발표란에 “제 1연자”로 표시하며 제 1연자가 아닐 때에는 “공동발표”로 표시한다.

별지 제 6 호-3

4. 논문제출

논 문	점 수

* 논문은 저자명, 잡지명, 권수, 면수, 발행년 순으로 표기하며 공저인 경우는 모든 공저자를 논문의 순서대로
기입하고, 본인이름 아래에 밑줄을 친다.

5. 진료수기 및 검사

진 료 수 기 및 검 사	회 수

주) 전임의 수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련 연도별로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한다.

전임의 학술집담회 기록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년월일	학술집회종류	학술집회제목	내 용	책임자	장소	시간

전임의 명부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별지 제 9 호

번 호		전임의 기록카드		학 인	
성 명	(한자) (영문)				사 진 (3.5×4.5cm)
주 소					
학력 및 경력	의과대학(의학대학원) 년 졸업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료				
주민등록번호	- 이동통신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소아청소년과 세부 전문의분야	
등 록 확 인	임 명 일		병 원 명		직 인
	수 료 일				

* 굵은 선 안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수련 이수자 명부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년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수련기간

교육지도자 명부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성 명	직 위	소아청소년과 전문 분야	취득 연도	분과전문의 인정번호

제 호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서

병 원 명 칭 :

소 재 지 :

대 표 자 :

분 과 :

기 간 :

위와 같이 분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함.

년 월 일

대한소아과학회 이사장 (인)

_____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병 원 명			
소 재 지			
소아청소년과 책임자		전 화	
지정 받고자 하는 분과 전문 분야		지정 받고자 하는 전임의 인원	

1. 신청병원의 종류

- 1) 병원의 종류 :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 기타()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여부 :
예(), 아니오()
- 3) 소아청소년과 내에서 해당 전문 분야가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
예(), 아니오()
- 4) 3)호에서 독립된 경우 그 형태는? ()

2. 신청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및 장비 현황

- 1) 병원의 허가 병상수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상수 :
_____ 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특수병동 존재 유무 :
_____ 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병상수 :
2) _____ 전문 분야 교육지도자 수 :
간호인력 :
연관된 타과의 존재여부 : 소아심장과, 소아외과, 소아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기타()
- 3) _____ 전문 분야의 장비 현황 :

별지 제 14 호-2

3. 진료 실적

1) 연간 소아청소년과 전체의 외래환자 수 ()명

_____ 전문 분야의 클리닉 존재 여부 :

연간 _____ 전문 분야의 환자 수 ()명

2) 연간 소아청소년과 퇴원 환자수 :

_____ 전문 분야의 연간 퇴원 환자수 :

* 2, 3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보조자료(병원연보, 상병별 통계 등)의 첨부요.

별지 제 14 호-3

4. 교육현황

1)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를 년차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1년차 : ()명

2년차 : ()명

3년차 : ()명

4년차 : ()명

총 : ()명

5. 교육지도자

성 명	직 위	분과 전문 분야	취득 연도	분과전문의 인정번호

6. 검사시설

7. 연관된 타과의 존재 여부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응시원서

일련번호			지원 전문 분야				사진 (반명함판)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일				
성명	(한글) (한자)		응시구분		초회 응시, 1차 면제				
이동통신			주민등록 번호		-				
E-mail									
자택주소									
직장명, 주소									
직위									
학력	학위	취득년월일				수여대학			
	학사								
	석사								
	박사								
인턴경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병역사항	군별	계급	복무기간	면제(미필)사유		
레지던트 경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한		소아과책임자 성명			
전임의 경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한		교육지도자 성명			
	정규								
	파견								
	이동								
전문 분야 실무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본인은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지원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험의 정지, 합격의 무효 또는 분과전문의 자격인정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험번호	수험표 (소아청소년과 분과전문의 자격인정시험)				
일련번호	지원전문분과				사진 (반명함판)
의사면허 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일		
성명	(한글) (한자)		응시구분	초회 응시, 1차 면제	
주민등록 번호	-		이동통신		
			E-mail		
☐ 수험표는 필히 휴대하여야 함. ☐ 시험시작 시간 이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음. 년 월 일 대한소아과학회이사장					

제 호

전임의 수련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수련분야 : 분과

수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병원에서 소정의 전임의 과정을 수련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제 호

전임의 파견수련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수련분야 : 분과

파견수련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병원에서 소정의 전임의 과정을 파견 수련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연수평점 기록지

제출자 성명 : (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
 전문 분야 :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

1. 연수강좌 및 실습

연수 날짜	연 수 교 육 제 목	장 소	주 최	평 점

2. 학술대회

개최 일시	학 술 대 회 명	장 소	주 최	평 점

3. 논 문

저 자	제 목	분 류	발표 학술지	평 점

공저인 경우 모든 공저자를 순서대로 기입하고, 본인 이름 아래에 밑줄을 친다.

분류란에 원저, 종설 또는 증례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씩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전문 분야 :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

연수교육 이수평점 : 연수강좌 및 실습	평점
학술대회	평점
논문	평점
총	평점

평점 취득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소정의 _____ 분과전문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_____(해당 분과) 학회장 (인)

전임의 수련평가서

성명 : _____ 소속분과 ; _____
수련기간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병원명 : _____

평가자 : 소아청소년과 과장 : _____ (인)

_____ 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_____ (인)

항 목	평 가 등 급										내 용
	불 만 족			보 통				우 수			
전 문 지 식	1	2	3	4	5	6	7	8	9	10	질병의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정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정도, 최신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및 습득정도
병 력 청 취	1	2	3	4	5	6	7	8	9	10	정확성, 완전성, 논리성, 효율성, 신뢰성
진 찰	1	2	3	4	5	6	7	8	9	10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숙련도
수기및검사	1	2	3	4	5	6	7	8	9	10	정확성, 안정성, 적절한 선택, 숙련도
판 단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각종 임상적 문제의 적절한 인지, 각종 자료 및 검사 방법의 적절한 선택 및 해석 능력, 치료방법의 적절한 선택과 수행시기의 적절성, 임상적 문제의 평가 및 진단의 정확성
타 과 상 담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타과와의 의사소통의 원활성, 시의 적절 성, 적절한 시행여부
인 성	1	2	3	4	5	6	7	8	9	10	임상의로서의 적절한 윤리적 태도 및 행동
환 자 를 보 는 태 도	1	2	3	4	5	6	7	8	9	10	환자 및 환자 가족과의 적절한 의사소 통 및 관계 유지
연 구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계획수립, 수행, 발표, 논문 작성 능력
교 육 능 력	1	2	3	4	5	6	7	8	9	10	환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시행 여부, 동료 및 후배의사에 대한 교육
비 고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신청서

일련번호		전문 분야		분과전문의 자격취득일 (최종갱신일)				
의사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				
주 소								
현 직								
학 력	학위	취 득 년 월 일			수 여 대 학			
	학사							
	석사							
	박사							
인 턴 경 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병역 사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면제(미필) 사유
레 지 던 트 경 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 한		소아청소년과 책임자 성명	
전임의 경 력		수련기간	수련병원		연 한	교육지도자 성명		
	정규							
	파견							
	이동							
전문 분야 실무 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직 위		
본인은()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자원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분과전문의 자격갱신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대한소아과학회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서식 목록 2

(분과별 전용 서식 목록)

별지 서식	제 목
제6-2호	전임의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전용]
제10-2호	수련 이수자 명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제14-2호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신생아 분과전문의 전용]
제17-2호	연수평점 기록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제18-2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별지 제 6-2호-2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전용]

2. 진료환자 수

전임의 1년차	월 별 진 료 환 자 수												총환자수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타 과 진 료 상 담													

전임의 2년차	월 별 진 료 환 자 수												총환자수
	3	4	5	6	7	8	9	10	11	12	1	2	
입 원 환 자													
외 래 환 자													
타 과 진 료 상 담													

별지 제 6-2호-3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소화기영양 분과전문의 전용]

3. 연수강좌 및 실습

년 월 일	연수강좌 및 실습 제목	장소	주관학회	평 점
총 점				

별지 제 6-2호-4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4.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집담회 및 연구회

1) 집담회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 점
횟수 () 평점 ()				

2) 연구회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 점
횟수 () 평점 ()				

별지 제 6-2호-5 수련기록부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5. 학술대회

년 월일	학 술 대 회 명	주체 기관	평점	참석	발표
	(논문제목)				

* 논문 발표시에는 학술대회명 아래에 발표 논문의 제목을 기록하고 제 1연자일 때는 발표란에 “제 1연자”로 표시하며 제 1연자가 아닐 때에는 “공동발표”로 표시한다.

6. 타과 파견 (해당 사항 없음)

7. 논문

* 분류는 원저, 증례, 종설로 구분합니다.

- 318 -

수련 이수자 명부

년 월 일

병원명 :

소아청소년과 과장 :

(인)

_____분과 책임 교육지도자 :

(인)

년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의사 면허번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실제 수련기간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			- (개월)

수련 기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중

1개월 이상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교육지도자나 전임의의 부재 유무를 확인 후 당사자가 서명합니다.

	성 명	부재 유무		사유 (연수, 출산, 병가, 군복무 등)	기간(개월)
		유	무		
교육 지도자					- (개월)
					- (개월)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전임의					- (개월)

연수평점 기록지

제출자 성명 : (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번호 :

전문 분야 : 분과전문의 인정증 번호(갱신시) :

증빙서류(평점인정카드와 논문 별책 1부씩)을 제시된 형태로 정리하여 같이 제출

1. 연수강좌 및 실습

연수 날짜	연 수 교 육 제 목	장 소	주 최	평 점

2. 학술대회

연번	년 월일	학 술 대 회 명	주최 기관	평점	발 표
		(발표 연구/논문 제목)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인정()/관련()		

3. 논문

- * 논문은 저자명, 잡지명, 권수, 면수, 발행년 순으로 표기하며 공저인 경우는 모든 공저자를 논문의 순서대로 기입하고, 본인이름 아래에 밑줄을 친다.
- * 분류는 원저, 증례, 종설로 구분한다.
- * 증빙서류(KMA 교육센터[<http://edu.kma.org>]에서 발행한 학술대회 참석확인서,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의 평점카드 사본 혹은 국제학회 참석 증빙자료) 및 논문 별책 사본 1부씩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4. 소아내분비 집담회 및 연구회

1) 집담회

연번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점
횟수/평점					

2) 연구회

연번	년 월 일	제목	장소	주체	평점
횟수/평점					

별지 제 17-2호-5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1. 연수강좌 및 실습 - 증빙서류]							
연수강좌/실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연수강좌/실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날짜		평점		날짜		평점	
제목				제목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별지 제 17-2호-6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2. 학술대회 - 증빙서류]							
연수강좌/실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연수강좌/실습 평점 카드		연번호 () -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날짜		평점		날짜		평점	
제목				제목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주관 학회		지회	아니오() 예()

별지 제 17-2호-7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3. 논문 - 증빙서류] 논문 앞장에 첨부해주시 바랍니다. 부족하면 복사해서 사용							
논문	연번호 ()	저자수		명	분류		기여
저자							
제목							
서지정보						잡지명 년도;권수(호):면수	
접수일							
초록	작성방법: 제출시 지워주세요 분류는 원저, 증례, 종설 기여는 공저자, 1저자, 교신저자 초록(원저나 종설), 한글 또는 영문 요약(증례)을 이 cell에 적어주세요 내용이 넘어가면 글자 크기를 10 point에서 줄여주세요						
의의							
논문이 가지는 의의를 짧게 기술							

별지 제 17-2호-8 연수평점 기록지[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보충자료 [4. 집담회 및 연구회 - 증빙서류]											
집담회 카드		평점/참석 연번호 () - 부족하면 복 사해서 사용				집담회 카드		평점/참석 연번호 () - 부족하면 복 사해서 사용			
날짜		평점	점			날짜		평점	점		
행사명	()년 ()차 집담회	장소				행사명	()년 ()차 집담회	장소			
주제						주제					

별지 제18-2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분과전문의 전용]

제 호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번호 :

전문 분야 :

분과전문의 인정증 번호(갱신시) :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인정증번호 :

수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개월)

		신규 신청 시		갱신 시	평점 합계	
		전임의 (1년차)	2년째			
			전임의 () 기타실무 ()			
연수교육 이수평점	연수강좌 및 실습					평점
	학술대회					평점
	논문					평점
	집담회/연구회	/	/	/		평점
	총					평점

평점 취득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규 신청 시		갱신 시	비고
기간		전임의 (1년차)	2년째		
직위		전임의			
연수강좌 및 실습 (소아내분비학회, 인정학회)					
학술 대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인정/관련	/	/	/	
논문	구연 또는 포스터 (1저자 또는 책임)				평점 기입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인정/관련 학회지				
제 1저자 논문 갯수					
집담회/연구회					
입원/외래/의뢰 충족 20/100/10					

위 자는 소정의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연수평점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한소아 _____ 학회장 (인)

신생아 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실태조사서

병 원 명			
소 재 지			
소아청소년과 책임자		전 화	
지정 받고자 하는 분과 전문 분야		지정 받고자 하는 전임의 인원	

1. 신청병원의 종류

- 1) 병원의 종류 : 대학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기타()
-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병원 여부 : 예(), 아니오()
- 3) 소아청소년과 내에서 신생아과가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 예(), 아니오()
- 4) 3)호에서 독립된 경우 그 형태는? ()

2. 신청병원의 병상, 의료인력 및 장비 현황

- 1) 병원의 허가 병상수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병상수 :
신생아 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특수병동 존재 유무 :
신생아 전문 분야 환자를 위한 병상수 :
- 2) 간호인력 :
- 3) 신생아 전문 분야의 장비 현황 :
인공환기기()대, 보육기()대, 혈액가스분석기()대,
혈당측정기()대, 흉부 방사선 촬영기(CXR) ()대, 초음파()대
기타

3. 진료 실적

- 1) 연간 소아청소년과 전체의 외래환자 수 ()명
신생아 전문 분야의 클리닉 존재 여부 예(), 아니오()
연간 신생아 전문 분야의 환자 수 ()명
연간 특수클리닉의 추적진료 환자 수 ()명
- 2) 연간 소아청소년과 퇴원 환자수 ()명
신생아 전문 분야의 연간 퇴원 환자수 ()명
연간 극소저체중출생아 입원환자수 ()명

4. 교육현황

1) 현재 수련 중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수를 년차별로 기재해 주십시오.

1년차 : ()명

2년차 : ()명

3년차 : ()명

4년차 : ()명

총 : ()명

5. 교육지도자

성 명	직 위	전문 분야	취득 연도	분과전문의 자격증 번호

6. 검사시설

1) 혈액가스 분석 ()

2) 초음파검사 ()

3) 유발전위검사 ()

7. 연관된 타과의 존재 여부

연관된 과	존재 여부	전문의 성명
흉부외과		
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기타		